

[] 1

2020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



‘개 전기도살 사건’의 경과와 의의 및 향후과제



생명을 생명답게 대하는 사회를 바라며

우리는 필연적으로 삶 속에서 여러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얽혀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 등장하는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문장의 뜻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까이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 범주를 인간을 넘어 좀더 확장하고자 할 때 장애물과 벽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그 벽에는 우리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온 다른 생명들에 대한 차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벽은 견고하여 우리와 같은 생명체인 동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거나 가두어도, 심지어 잔혹하게 죽일지라도 이를 합리화 하거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생명이되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모순. 개 도살 문제 역시 이러한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별의 벽 너머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학대와 같은 환경에 가두어 키우고, 짐짝처럼 옮기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여도 단지 '식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쉽게 면죄부가 발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철옹성 같던 차별의 벽과 모순에도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동물에 대한 차별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변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사법부 역시 최근 판결들에서 "더이상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며 차별적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식용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잔인하면 안 되고, 이를 사회평균인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에서 특정한 방법이 아닌한 막을 수 없던 무분별하게 동물을 죽이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역시 1심과 항소심, 상고심 그리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쏟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동물운동단체 활동가들은 더위와 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거리에 섰으며, 3만 명의 시민들은 서명으로 이를 응원했습니다. 또 전문가단체들은 개 전기도살의 부당함을 법률적, 수의학적 관점에서 피력했습니다.

우리는 '개 전기도살 사건의 경과와 의의 및 향후과제'에 동물운동사에 전환점이 될 이 사건의 전말과 함께 그 과정에서의 노력들을 기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기록들이 생명을 생명답게 대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선 우리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함께 이끌어 준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개인활동가와 시민분들,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PNR, 수의학적 의견을 제시해준 대한수의사회와 우희종 교수님, 그리고 법률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본 책자의 발간에도 함께 해준 ‘동물의 권리를 위한 변호사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동물에 대한 인간의 폭력이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이하 ‘동변’)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동물권 관련 연구, 제도개선 활동, 교육, 정책 제안, 동물학대 사건 대응 등을 함께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2014년 공장식 축산 반대 헌법소원 제기로 활동을 시작한 동변은 계란포장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개 전기도살 사건 의견서 제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제정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등에 관한 의견서 제출, 산천어 축제 공동 대응 및 고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동물의 권리편 집필, 동물의 권리를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집필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 전기도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동물학대에 대한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며, ‘개’라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동물과 생명에 대한 의식을 한 층 더 진보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동변은 개 전기도살 사건을 접한 2017년부터 법원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꾸준히 참관해 왔습니다. 동변은 의견서를 통해 원심이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사실을 검사에게 입증하도록 한 부분, 사회평균인이 아닌 관련 업계 종사자의 입장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부분, 소, 돼지, 닭 등 개와 다른 종에 대한 전기도살 방법을 개에게 유추하여 개가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한 부분 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대법원의 판결에 일부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동변은 하급심에서부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올해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개도살 판결을 모니터링 하였기에 이번 백서 발간을 즈음하여 느끼는 감회가 작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판결들을 다시 살펴보니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여서 ‘왜 그때 이걸 놓쳤을까’ 후회하는게 한 두개가 아니지만, 백서에 기록된 열정적인 활동의 기록을 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구나 싶습니다.

때로는 법률 또는 법조항 자체보다 이것을 해석하는 고정관념이 더 문제가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어떤 법률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다해도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설명과 더불어 고정관념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법원에 전달될 때, 새로운 판결이 나옵니다. 동변

은 최선의 설명에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이 백서에 기록된 활동들 덕분에 개 전기도살이 동물학대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 전기도살 사건 백서가 우리나라의 개 도살 종식을 위한 큰 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음들이 모여 개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간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없어지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개 전기 도살 사건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치열하게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역사를 담아내는 작업에 함께 하게 해주신 동물자유연대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목 차

제1장 사건의 개요	1
------------------	---

제2장 사건의 경과	5
------------------	---

1. 약식명령	7
2. 정식재판 청구	7
3. 국민참여재판 회부	7
4. 1심	8
5. 2심	9
6. 3심	10
7. 파기환송심	11
8. 재상고심	15
9. 참고 : 동물단체의 대응	16

제3장 판결 내용	17
-----------------	----

1. 1심(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7. 6. 23 선고	19
2. 2심(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7. 9. 28 선고	25
3. 3심(대법원) 2018. 9. 13 선고	31
4.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35

5. 재상고심(대법원) 2020. 4. 9 선고	50
----------------------------------	----

제4장 참고 판례(식용목적 개 도살)53

1. 대법원 1977도○○○(절도·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1977. 9. 28. 선고	5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식품위생법위반(변경된 죄명 동물보호법위반)) 2003. 4. 22. 선고	56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고정○○○○(동물보호법위반) 2011. 9. 15 선고	57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동물보호법위반) 2014. 6. 13 선고	58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약○○○○(동물보호법위반) 2012. 11. 26 선고	59
6.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3. 2. 5 선고	60
7.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동물보호법위반) 2017. 11. 24 선고	6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정○○○(동물보호법위반) 2013. 11. 6 선고	6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 2016. 9. 8 선고 ...	6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6. 9. 8 선고	6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약○○○○(건축법, 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동물보호법 위반) 2018. 4. 16 선고	67
--	----

제5장 ‘개 전기도살’ 사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71

1. 이 시대의 동물법	73
2. ‘일반 정서상 개고기도 식용이다’는 과거의 판결	74
3. 개 도살 판결	75
4. 개도살 판결의 의의와 한계	83
5. 나가며	84

제6장 참고 자료85

1. 동물단체 기자회견문, 성명서 등	87
2. 직무유기 검사 고소장	108
3. 개 전기도살 사건 관련 언론보도 내용	110

■ 제1장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자신의 농장에서 끈으로 묶어 놓은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도살,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2016. 10. 31.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동물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부천지원은 2016. 12. 2.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단독재판부의 정식재판청구 피고사건으로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17. 2. 14. 이를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재정합의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이 사건은 2017. 2. 20.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원심 재판부)로 이송되었는데, 피고인이 2017. 3. 2.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 2017. 3. 24.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와 같은 철회 의사를 진술했다. 원심은 2017. 6. 23.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 9. 28. 그와 같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다시 상고했는데, 상고심은 2018. 9.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8. 9. 27 사건을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9회의 공판과 2회의 증인신문, 수회의 사실조회 등을 거쳐 2019. 12. 19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어렵고, 법정에서 더이상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들어 2년간 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 2019. 12. 23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2020. 1. 29 사건을 접수한 뒤 2020. 4. 9. 판결을 통해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4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드디어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잔인하며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제2장 ■

사건의 경과

01. 약식명령
02. 정식재판 청구
03. 국민참여재판 회부
04. 1심
05. 2심
06. 3심
07. 파기환송심
08. 재상고심
09. 참고 : 동물단체의 대응

01. 약식명령

2016.10.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약식명령신청 접수

2016.12.02 약식명령

02. 정식재판 청구

2016.12.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식재판청구서 접수

2017.01.13 피고인 ○○○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제출

2017.01.13 공판기일(제352호 법정 11:00)(검사 김한울, 피고인 ○○○ 출석/속행)

2017.01.16 변호인 김지영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1.16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2017.01.23 변호인 김지영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7.01.24 변호인 김지영 참고자료 제출

2017.01.24 공판기일(제352호 법정 17:10)(검사 김한울, 변호인 김지영, 피고인 ○○○ 출석 / 변론종결)

2017.02.09 변호인 김지영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7.02.10 선고기일(제352호 법정 14:00)(검사 김한울, 변호인 김지영, 피고인 ○○○ 출석 / 변론재개(추정))

2017.02.10 (피고인○○○) 변론재개결정

2017.02.14 피고인 ○○○ 종국 : 재정합의

03. 국민참여재판회부

2017.02.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소장접수

2017.02.20 피고인1 ○○○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등본 발송

2017.02.22 피고인 ○○○ 종국 : 이송

2017.02.23 법원 인○○ 이송기록 발송

04. 1심

- 2017.02.24 공소장접수
- 2017.03.02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 2017.03.03 변호인 김현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2017.03.03 피고인 ○○○ 국선변호인선정청구 제출
- 2017.03.03 피고인 ○○○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희망) 제출
- 2017.03.03 피고인 ○○○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 2017.03.03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
- 2017.03.10 (피고인○○○) 공판준비기일결정
- 2017.03.17 변호인 김현구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 2017.03.22 변호인 김현구 국민참여재판신청의사 철회확의서 제출
- 2017.03.24 공판준비기일(제324호법정 11:00)(검사 검사 정혁, 피고인 ○○○, 변호인 김현구 출석 / 준비기일종결)
- 2017.03.28 검사 정혁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 2017.04.04 변호인 김현구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 2017.04.07 공판기일(제324호 법정 10:00)(검사 검사 정혁, 피고인 ○○○, 변호인 김현구 출석 / 속행)
- 2017.04.14 변호인 김현구 사실조회신청 제출
- 2017.04.14 변호인 김현구 사실조회신청 제출
- 2017.04.17 검사 정혁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 2017.04.17 기타 농○○○○○○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 2017.04.17 기타 사○○○○○○○○○○○○○○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 2017.04.20 변호인 김현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 2017.05.11 공판기일(제324호 법정 10:00)(검사 검사 정혁, 피고인 ○○○, 변호인 김현구 불출석 / 연기)
- 2017.05.11 피고인1 변호인 김현구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7.05.12 피고인1 ○○○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7.05.12 기타 농○○○○○○ 문서송부촉탁독촉 발송
 2017.05.15 기타 사○○○○○○○○○○○○○○○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7.05.15 변호인 김현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6.01 변호인 김현구 변론요지서 제출
 2017.06.01 기타 농○○○○○○ 문서송부촉탁회신 제출
 2017.06.01 공판기일(제324호 법정 10:30)(검사 검사 정혁, 피고인 ○○○ , 변호인 김현구 출석 / 변론종결)
 2017.06.23 피고인 ○○○ 판결등본송달신청 제출
 2017.06.23 선고기일(제324호 법정 13:40)(검사 검사 정혁, 피고인 ○○○ 출석, 변호인 김현구 불출석 / 판결선고)
 2017.06.26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17.06.29 검사 정혁 항소장 제출
 2017.06.30 피고인1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05. 2심

2017.07.12 사건접수
 2017.07.17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발송
 2017.07.19 검사 정혁 항소이유서 제출
 2017.07.20 피고인1 ○○○ 항소이유서 발송
 2017.07.27 피고인1 ○○○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7.07.2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7.08.16 검사 송명진 진정서송부 제출
 2017.08.22 기타 동○○○○○○○○○○○○○○○ 참고자료 제출
 2017.08.22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4:20)(검사 전석수, 피고인 ○○○ 출석 / 속행)

2018.09.05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09.13 선고기일(제1호법정 15:10)(검사 김후곤, 피고인 ○○○ / 판결선고)
 2018.09.13 피고인 ○○○ 종국 : 파기환송
 2018.09.14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18.09.20 폐문부재
 2018.10.01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18.10.05 송달됨

07. 파기환송심

2018.09.27 사건접수
 2018.10.02 피고인1 변호인 한문규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10.04 피고인1 ○○○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8.10.08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2018.10.08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2018.10.08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2018.10.08 피고인1 변호인 권태섭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 등 발송
 2018.10.08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
 2018.10.08 피고인1 변호인 한문규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10.10 피고인 ○○○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12 변호인 법무법인 위 공판기일변경신청 제출
 2018.10.12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12 피고인 ○○○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10.12 (피고인○○○ 외2 명) 공판기일변경명령
 2018.10.12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2018.10.12 피고인1 ○○○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8.10.12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10.12 피고인1 변호인 위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8.10.23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㉔번 법정출입구) 10:20)(검사 김현선, 피고인 ○○○○ , 변호인 위 / 기일변경)
2018.11.14	변호인 법무법인 위 사실조회신청 제출
2018.11.14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1.15	기타 사○○○○○○○○○○○○○○○○○○○○○○○○○○○○○○ 의견서 제출
2018.11.15	기타 동○○○○○○○○○○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환송심 의견서 제출
2018.11.15	변호인 박주연,서국화,김슬기,신수경,안나현 의견서 제출
2018.11.15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㉔번 법정출입구) 10:00)(검사 김현선, 피고인 ○○○○ , 변호인 위 출석 / 속행)
2018.11.15	기타 한○○○○○○○○○○○○○ 사실조회서 발송
2018.11.16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10	변호인 법무법인 위 사실조회신청 제출
2018.12.10	변호인 법무법인 위 사실조회신청 제출
2018.12.10	변호인 법무법인 위 사실조회신청 제출
2018.12.10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2.12	기타 농○○○○○○○○○ 사실조회서 발송
2018.12.12	기타 국○○○○○○○○○ 사실조회서 발송
2018.12.12	기타 전○○○○○○○○○ 사실조회서 발송
2018.12.12	기타 대○○○○○○○○○ 사실조회서 발송
2018.12.13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㉔번 법정출입구) 11:00)(검사 김현선, 피고인 ○○○○ , 변호인 위 출석 / 속행)
2018.12.14	기타 한○○○○○○○○○○○○○ 사실조회서 독촉 발송
2018.12.27	기타 한○○○○○○○○○○○○○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9.01.02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09	기타 대○○○○○○○○○○○○○○○○○○○○○○○○○○○○○○○ 사실조회회신/진정서 제출
2019.01.09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11 기타 전OOOOOOOOOOO 답변서 제출
 2019.01.11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14 검사 김현선 증인신청 제출
 2019.01.15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16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01.16 변호인 법무법인 위 증거제출서 제출
 2019.01.16 기타 조OO 의견서 제출
 2019.01.16 동물권연구단체 변호사 박OOOOOO 의견서 제출
 2019.01.17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19.01.17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17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㉔번 법정출입구) 10:00)
 (검사 김현선, 피고인 ○○○, 변호인 위 출석 / 속행)
 2019.01.17 기타 농OOOOOOO 사실조회서 독촉 발송
 2019.01.17 기타 국OOOOOOO 사실조회서 독촉 발송
 2019.01.21 기타 농O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9.02.07 기타 국OOOOO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9.03.12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9.03.12 변호인 법무법인 위 증거 및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2019.03.13 기타 조OO 참고서류 제출
 2019.03.14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3.14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㉔번 법정출입구) 10:00)
 (검사 김현선, 피고인 ○○○, 변호인 위 출석 / 속행)
 2019.05.13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05.15 기타 강OOOOOOO 참고자료(탄원서) 제출
 2019.05.16 검사 서봉규 의견서 제출
 2019.05.16 검사 서봉규 사실조회 신청 제출

2019.05.16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5.16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검사 서봉규, 피고인 ○○○, 변호인 위 출석 / 속행)

2019.06.19 변호인 위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2019.06.19 변호인 위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2019.06.20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검사 서봉규, 피고인 ○○○, 변호인 위 출석 / 속행)

2019.06.20 기타 경○○○○○○○○○○○○○○○○○○○○ 사실조회서 발송

2019.06.20 기타 서○○○○○○○○○○○○○○○○○○○○ 사실조회서 발송

2019.07.04 기타 경○○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9.07.04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7.12 기타 서○○○○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9.07.12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7.18 검사 서봉규 증인신청 제출

2019.07.18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검사 서봉규, 피고인 ○○○, 변호인 위 출석 / 속행)

2019.07.29 증인 우○○ 증인소환장 발송

2019.08.06 변호인 위 증인신청 제출

2019.08.13 변호인 위 참고자료 제출서 제출

2019.08.13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검사 서봉규, 피고인 ○○○, 변호인 위, 증인 우○○ 출석 / 속행)

2019.08.14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8.19 검사 박재현 참고자료 제출

2019.08.22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8.22 검사 박재현 증인신청 제출

2019.08.26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8.26 검사 박재현 참고자료 제출

2019.08.26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9.09 검사 박재현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19.09.09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9.10 변호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09.16 변호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09.17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4:30)(검사 박재현, 피고인
○○○, 변호인 위 출석 / 속행)

2019.09.18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9.18 증인 조○○ 증인소환장 발송

2019.10.08 변호인 위 담당변호사지정 철회서 제출

2019.11.05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5:00)(검사 박재현, 피고인
○○○, 변호인 위, 증인 조○○ 출석 / 속행)

2019.11.06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2.06 기타 임○○ 의견서 제출

2019.12.06 기타 임○○ 탄원서 제출

2019.12.12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2.19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4:00)(검사 박재현, 피고인
○○○ 출석, 변호인 위 불출석 / 판결선고)

2019.12.19 피고인 ○○○ 중국 : 선고

2019.12.20 변호인 위 판결등본 2019.12.20 발급

08. 재상고심

2020.01.29 사건접수

2020.01.30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1.30 피고인1 변호인 현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2.07 기타 가OOOO 탄원서 제출
 2020.02.24 변호인 현재 상고이유서 제출
 2020.03.30 피고인1 변호인 현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3.30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04.09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검사 노정환, 피고인 ○○○, 변호인 현재 출석)
 2020.04.09 피고인1 이철수 판결문등본 발송
 2020.04.09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04.21 변호인 현재 판결등본 2020.04.21 발급

09. 참고 : 동물단체의 대응

2017.07.23~2017.08.18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 시민서명활동
 2017.08.22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를 위한 기자회견 및 서명지 전달
 2017.09.13 수의사, 수의학자 등 263명 '무죄판결 파기 촉구 서명' 전달
 2017.09.26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및 28개 시민단체 연명 탄원서 제출
 2017.09.28 “차라리 동물보호법을 폐기하라!” 2심 판결 규탄 성명 발표
 2017.09.29 서울고등법원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 담당검사 직무유기 고발
 2017.12.22 2심 판결에 대한 변호사단체 의견서 제출
 2018.09.13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환영 성명 발표
 2018.11.15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2019.12.19. 동물자유연대, 파기환송심 유죄판결 환영 논평 발표
 2020.01.13.~2020.02.03 동물자유연대, ‘개 전기도살 사건’ 피고인 상소에 시민 탄원 진행
 2020.04.09. 개 전기도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 제3장 ■

판결 내용

01. 1심(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7. 6. 23 선고
02. 2심(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7. 9. 28 선고
03. 3심(대법원) 2018. 9. 13 선고
04.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05. 재상고심(대법원) 2020. 4. 9 선고

01. 1심(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7. 6. 23 선고

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 ○○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등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를 죽여 도축한 행위는 전살법에 따른 도축에 해당하는데,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방법 중 하나로서 돼지,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판단

1)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다만, 형벌법규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 중에서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오직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는지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 판결 참조).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잔인’의 사전적 의미는 ‘인정이 없고 모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념이 추상적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 특히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중에서도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규정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 규정체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만연히 ‘잔인’의 사전적 의미만을 적용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개를 도축하기 위하여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를 죽인 행위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관련 규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의 도살방법’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가스법, 약물 투여, 제2호에 전살법, 타격법, 총격법, 자격법을 각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도살방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7호)은 포유류 중 소, 돼지와 조류 중 닭과 오리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동물을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옮기는 ‘하차’, 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계류’,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보정’,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기타 방식으로 동물의 의식을 상실케 하는 ‘기절’, 기절한 동물의 혈액을 체외로 방출시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혈’ 등 도축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별표 1은 축종별 기절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의 경우에는 타격법, 돼지의 경우에는 타격법, 전살법, CO2 가스법, 닭과 오리의 경우에는 전살법(전기수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전살법의 경우 최소 전류량과 최소통전 시간 등을 정하고 있다.
- ④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에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은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의 도살은 타격법, 전살법, 총격법, 자격법 또는 CO₂ 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하고,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의 도살은 전살법, 자격법 또는 CO₂ 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⑤ 동물의 도살은 일반적으로 동물을 기절시킨 후 방혈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도살방법 중 타격법은 동물의 앞이나 부위를 타격하여 기절시키는 방법이고, 전살법은 동물의 머리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기절시키는 방법이다. 보통 돼지, 닭, 오리 등 중·소동물의 경우에 전살법을 이용하여 도살하고, 소와 같이 큰 동물의 경우에는 전살법으로 기절시키기 어려워 타격법을 이용하여 도살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동물의 도살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 ①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고,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따라야 할 도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등의 동물 학대행위를 금지함과 함께 위와 같이 동물의 도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보장을 꾀하면서 인간이 불가피하게 동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물에 대하여 인도적인 처우를 하도록 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동물보호정신을 함양하려는 데에 있다. 위 규정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다른 도살방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도적이고, 동물에 가하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도살한 경우, 그 도살방법이 기본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적용되는 동물관리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개를 도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경우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을 도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함이 헌법적 요구이고,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금지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를 금지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물(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이라는 용어를 제8조 제1항 제1호와 제10조 제1항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두 조항에서 ‘잔인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을 해석한 것과 동일하게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앞서 본 동물보호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개를 죽이게 된 경위, 개를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용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들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하여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다. 특히 동물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은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전살법을 규정하면서 최소 전류량, 최소 통전 시간 등을 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동물을 최대한 신속하고 완전하게 기절시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를 감전시킬 때의 전류량, 통전 시간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특별히 피고인이 개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기절시키지 못하여 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2. 2심(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7. 9. 28 선고

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규정된 도살 방법(전살법 등) 및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단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였을 뿐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도살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등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동물도축세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도살 방법(특히 전살법)을 이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도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나아가 개가 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도살 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인이 개를 죽이게 된 경위, 개를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용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 방법과 비교하여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해석

1) 검사의 공소제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지

가)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나) 동물보호법은 제2조 제1의2호에서 ‘동물학대’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8조에서 ‘동물학대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제1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제2호) 등 ‘일정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등의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학대행위에는 죽이는 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에 대하여는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제8조 제4항은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¹⁾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 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

1)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도살은 ‘짐승을 잡아 죽임’이라는 뜻이고, 도축은 ‘고기를 얻기 위하여 가축을 잡아 죽임’이라는 뜻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뜻의 차이를 기초로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되 법령의 문언은 그대로 사용한다.

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라) 일반적으로 ‘죽이는 행위’는 가장 중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러나 ‘학대’는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이라는 뜻으로 그 자체로 ‘죽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동물보호법은 ‘죽이는 행위’와 ‘학대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잔인한 방법’ 등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만을 처벌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소유자로서 또는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개를 도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그 쟁점이라 할 것이다.

3)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잔인한 방법’의 의미

가) ‘잔인한 방법’의 해석 기준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語義)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다(대법원 2005.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등 참조).

‘잔인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다’는 것이나, 아직 판례상 개념규정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더욱이 ‘잔인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 상대적인 개념인데다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칫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나 처벌의 기준이 너무나 불명확하게 되어 위헌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문언과 해석에 부합하면서도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동물을 죽이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아니하고,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동물을 죽이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에 대한 검토는 ‘잔인한 방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① 관련 법령의 규정

- ㉠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잔인한 방법의 예로 ‘목을 매다는 것’을 들고 있고, 제10조는 ‘도살 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되고’(제1항),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제2, 3항)고 규정한다.
-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 이에 반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법과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축산법 제2조 제1호,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호).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가축 중 토끼를 제외한 포유류에 대한 도살방법으로 ‘타격법’, ‘전살법’, ‘CO₂가스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별표1 참조).
- ㉣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7호)은 소, 돼지, 닭, 오리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제3조),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도축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도축 과정 중에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과(제4조) 하차 시설, 계류 시설 등의기준(제5, 6조), 동물 보정·기절·방혈시 준수사항

(제7~9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돼지에 대한 기절방법으로서의 전살법에 관하여는 ‘어떤 전압에서도 최소 1.25A 이상의 전류로 뇌 부위를 2~4초간 통전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관련 별표1).

- ② 위와 같은 가축의 도살 방법에 관한 규정은 개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규정 취지·내용 등에다가 동물보호법이 소유자 등에 의한 도살 자체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면서 일정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도살 방법에 따라 고통을 최소화하는 경우에는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다) ‘잔인한 방법’의 의미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이란 적어도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일 경우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이하 이를 통칭하여 ‘고통 등’이라 한다)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아니한 도축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물의 도살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동물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도살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명백하여 그것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에 겪는 고통 등의 정도에 이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전살법’과 같이 동물의 머리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기절시키거나 죽이는 방법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다.

- 2) 이 사건에 있어서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아니한 도축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 방법·절차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개에게 더 큰 고통 등을 주어 그 방법을 일컬어 ‘잔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농장에 하차·계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규모와 내용, 운용 방법은 어떤지, 피고인이 사용한 보정방법은 무엇인지, 피고인이 사용한 쇠꼬챙이에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지(동물도축세부규정상의 최소 1.25A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개가 기절하거나 죽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개가 기절하거나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갔는지 등을 전혀 확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방법이 관련 법령상의 도살 방법에 비하여 개에게 더 큰 고통 등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 3)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감전시켜 죽였으므로 관련 법령상의 ‘전살법’에 따른 도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법령의 도살 방법과 절차를 지켰는지가 아니라 목을 매다는 정도 또는 그이상의 고통 등을 주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03. 3심(대법원) 2018. 9. 13 선고

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들고 있고,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잔인’은 사전적 의미로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을 뜻하는데,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필, 구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의미와 입법 취지,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구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함과 아울러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그 적용대상인 동물의 개념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등으로 한정하며(제2조 제1호),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정한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각호).

위와 같은 구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적용 대상인 동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동물을 죽이는 방법이 잔인함으로 인해 도살과정에서 대상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그 방법이 허용될 경우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 함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정 도살방법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도

구, 행위 형태 및 그로 인한 사체의 외관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살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규범적으로 잔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 구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의 도살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모든 동물은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도,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도 안 되고(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제2항), 그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가축별 도살방법을 규정하고 있고(제2조, [별표 제1호]), 위 가축 중 소, 돼지, 닭과 오리에 대하여는 구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고시인 동물도축세부규정에서 가축별 특성에 맞추어 고통을 최소화하는 도축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 도살방법이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동일한 도살방법이라도 도살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물질, 도구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이용방법,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다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도살방법이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인 동물의 도살방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도살에 이용한 물질, 도구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다른 동물에게도 그 특성에 적합한 도살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 3)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인식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란 적어도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일 경우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않은 도축방법이 없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물의 도살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동물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명백하여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고통 등의 정도에 이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이하 ‘이 사건 도살방법’이라고 한다)으로 죽인 것이 이 사건 조항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6-77호)에서는 돼지, 닭, 오리에 대하여 전살법(電殺法)은 기절방법으로만 허용하고, 도살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대해 방혈(放血)을 시행하여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동물이 감전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통을 수반한 격렬한 근육경련과 화상, 세포괴사, 근육마비, 심실세동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이때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은 동물의 크기, 통전부위와 사용한 전류값 등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의 피고인이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하여, 그 심리결과와 이 사건 도살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도살방법이 이 사건 조항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불리 단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4.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 (1) 검사는 2016. 10. 31. 피고인을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12696). 위 법원은 2016. 12. 2.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2.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정1520).
- (2)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단독재판부의 정식재판청구 피고사건으로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17. 2. 14. 이를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재정합의결정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합24). 이 사건은 2017. 2. 20.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원심 재판부)로 이송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고합70).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2.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고, 2017. 3. 24.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와 같은 철회 의사를 진술하였다.
- (3) 검사는 원심 재판 계속 중이던 2017. 3. 28.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항

과 같은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²⁾”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원심은 2017. 4. 7.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 (4) 원심은 2017. 6. 23.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들면서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2030). 항소심 법원(환송 전 항소심)은 2017. 9. 28. 그와 같은 검사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해 검사가 다시 상고했는데, 상고심은 2018. 9.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7도16732).

나. 항소이유의 요지(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구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규정된 도살 방법(전살법 등) 및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단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였을 뿐,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도살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즉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개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

2) 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동물보호법을 말한다.

여서 도축하는 등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동물도축세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도살 방법, 특히 전살법(電殺法)을 이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도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이 개를 죽이게 된 경위, 개를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용 전살법을 이용하여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 방법과 비교하여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를 들고 있다.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잔인’은 사전적 의미로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을 뜻하는데,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필, 구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의미와 입법 취지,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구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함과 아울러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그 적용대상인 동물의 개념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등으로 한정하며(제2조 제1호),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정한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각호).

그와 같은 구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적용 대상인 동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동물을 죽이는 방법이 잔인함으로 인해 도살과정에서 대상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그 방법이 허용될 경우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 함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정 도살방법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도구, 행위 형태 및 그로 인한 사체의 외관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살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규범적으로 잔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 구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의 도살방법이라는 제목 아래, 모든 동물은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도,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도 안 되고(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제2항), 그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가축별 도살방법을 규정하고 있고(제2조, 별표 제1호),

위 가축 중 소, 돼지, 닭과 오리에 대하여는 구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고시인 동물도축세부규정에서 가축별 특성에 맞추어 고통을 최소화하는 도축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 도살방법이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동일한 도살방법이라도 도살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물질, 도구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이용방법,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도살 방법이 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인 동물의 도살방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도살에 이용한 물질, 도구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다른 동물에게도 그 특성에 적합한 도살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 3)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인식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 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 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동물도축세부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7호)에서는, 돼지, 닭, 오리에 대하여 전살법은 기절 방법으로만 허용하고, 도살 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대해 방혈(放血)을 시행하여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동물이 감전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통을 수반한 격렬한 근육경련과 화상, 세포괴사, 근육마비, 심실세동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이때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은 동물의 크기, 통전부위와 사용한 전류값 등에 의해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의 판단 요소와 함께, 이 사건 도살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사정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도살 방법

1) 피고인은 쇠파이프 끝 부분에 밧줄이 달린 장비를 사용하여 개를 묶어 놓은 다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쇠꼬챙이(이하 ‘이 사건 전살기’라 한다)를 개의 주둥이에 넣고 ON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감전을 시켜 죽인 직후, 토치로 개의 털이 없어질 때까지 약 30분 정도 그슬린 후 해체 등 처리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개가 쓰러진 후에 보통 방혈을 하지는 않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방혈을 해 주었다.

2) 한편 피고인은 개 도살의 구체적 방법 및 도살 과정에서 경험했던 사항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전살기에 사용한 전압은 380V였다. 이 사건 전살기를 개 주둥이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개는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할 틈도 없이 바로 1~2초 안에 다리를 쭉 뻗은 모습으로 죽는다. 죽은 개가 고개를 뒤로 젖힌 모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감전 당시 개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 바닥에 물을 뿌린 상태에서 개를 감전시켰는데, 그 이유는 전기가 잘 흐르는 상태를 만들고, 개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추가로 전기가 흘러서 죽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가 전기로 인하여 화상을 입는 경우는 없었고, 개가 뺨어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토치로 털을 그슬리는 작업을 하였다’.

(나) 우O종 교수의 증언 등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우O종은 ‘전기 충격에 의한 개 도살방식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제출함과 아울러, 이 법원에서 증언하였다. 그 증언의 주요 내용은 아래 1) ~ 7)항 기재와 같다.

1) 증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한 쇠꼬챙이나, 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상황 및 이 사건 도살 장소와 유사한 환경이 담긴 동영상들을 본 적이 있다. 이에 비추어, 이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전형적인 개 농장이나 개 도살 현장 사진으로 보인다(그 증언 당시 검사는 증거기록 31~42쪽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전살기의 사진, 이 사건 도살 현장에 관

계된 각 영상 등을 제시하였다).

- 2) 도살에 있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식을 잃게 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미국수의학협회(AVMA :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의 공식 지침에서는, 이와 같은 도살 방식(전기 안락사 방식)으로 3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다. 즉 ❶ 머리에의 단일 전기 충격, ❷ 머리에서 몸통으로의 단일 전기 충격, ❸ 머리 및 몸통에 대한 두 차례의 전기 충격 방식이 있다.
- 3) 위 ❶의 방식은 뇌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인데,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르게는 하지 못하고, 추가로 15초 내에 방혈이나 다른 사망 유도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위 ❷의 방식은, 전류가 뇌와 심장에 동시에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서 대발작과 심장 정지를 동시에 유도한다. 이를 위해 위 ❶의 방식보다 훨씬 강도가 센 충분한 전류를 3초 이상 사용해야 한다(전극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앞다리에 댄다). 위 ❸의 방식은, 위 ❶의 방식과 위 ❷의 방식을 둘로 나눈 것으로서, 뇌에 작용하는 1차 전류로 무의식 상태를 만든 다음, 다시 앞발 뒤편에 2차 전류를 가하여 심장 정지를 유도하는 것이다.
- 4) 동물이 사전에 의식을 잃도록 하는 인도적 도살 방식은, 위와 같이 뇌에 전류를 통하게 하여 ‘대발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대발작의 가장 대표적인 징표는 ‘후궁반장’으로서, 앞다리를 쪽 뻗으면서 등이 활처럼 되는 것(몸이 뒤로 젖혀지는 것)이다. 그 이외에 팔·다리의 돌출, 안구의 하향 회전, 강직 경련으로부터 간헐적 근육경련으로의 이행이 있어야 한다. 대발작 상태 이외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도적 도살이라 말할 수 없다.
- 5) 이와 달리 전류가 뇌를 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못 느끼는 대발작 내지 무의식 상태가 되지 않는다. 부적절한 전기를 가축에게 통하게 할 경우,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는 운동마비 상태는 되지만, 그 의식은 다 있는 상태에 머무른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심장 정지가 아닌 심장 세동 상태에 그쳐서, 매우 잘못된 조치가 된다. 이와 같이 무의식을 유발하지 않고 동물을 전기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은, 극도로 혐오적이며 수용해서는 안 된다.

6) 쇠꼬챙이를 이용해서 감전하는 방식, 이를 개 주둥이에 집어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이나 미국수의학협회 지침이 정하는 인도적 도살 방식이 아니다. 동물의 입에 쇠꼬챙이를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은, 그 전류가 뇌뿐만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로도 흐르기 때문에(식도 등을 통해 전류가 곧장 아래쪽으로 간다), 전기량이 많이 분산되어 무의식을 유발하기 어렵다. 한편 머리에서 동물이 서 있는 젖은 금속판으로 전류를 적용하는 방법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쇠꼬챙이를 입에 물게 하고 물에 젖은 상태로 만들어 전류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은, 운동신경을 마비시키기에는 좋은 방법이지만, 대발작을 일으키기에는 부적절하다.

7) 피고인이 개 도살에 사용한 방식은, 위 2)의 ❶ ~ ❸ 기재 지침에서 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방법이 대발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전기적 자극이 아니라면, 이로써 운동신경이 마비되더라도 의식은 남아 있어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된다. 적정 전류에 있어 개의 경우에 비교적 가까운 돼지의 경우, 1.25A 이상의 전류를 흘려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한 후 방혈을 같이 하여야 한다. 전류가 1.25A, 전압이 20~380V라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의 대발작 내지 무의식 상태를 유도할 수 없다.

(다) 국제협약 및 동물도축세부규정

1) 동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서는, 동물의 도살방법 중 ‘즉각적으로 무의식에 빠뜨리지 않는 감전사’를 금지하고 있다.³⁾

나) 대한민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은, 동물의 인도적 도살 기준에 관하여 최소한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동물도축세부규정은, 대한민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Chapter 7.5 Slaughter of Animals)에 기초한 것이다. 위 동물

3)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198, Article 10

2. The following methods of killing shall be prohibited

(c) electrocution unless preceded by immediate induction of loss of consciousness.

도축세부규정 제8조 제3항은 ‘기절은 가축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축종별 기절방법은 별표 1과 같다’라고 정한다. 그에 따른 [별표 1] ‘축종별 기절방법(제8조 제3항 관련)’에서는, 돼지의 경우 ‘어떤 전압에서도 최소 1.25A 이상의 전류로 뇌 부위를 2~4초간 통전시켜야 한다’라고 정하였다.⁴⁾ 같은 규정 제9조에서는 ‘방혈 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방혈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1항), ‘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제3항), ‘방혈 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제5항)라고 정해져 있다.

(3) ‘잔인한 방법’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1)항의 법리를 위 (2)항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도살 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일반적으로 동물이 감전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경우, 고통을 수반한 격렬한 근육경련과 화상, 세포괴사, 근육마비, 심실 세동 등의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앞서 (2)의 (가), (다)항에서 본 대로, 이른바 전살법에 의해 동물을 도축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과정에서, 위 ❶ ~ ❸에서 본 인도적 도살 방법에 의하지 않았음은 물론, 즉각적 무의식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개의 뇌에 전류를 집중하여 감전시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쇠꼬챙이 형태의 이 사건 전살기를 개의 입 부위에 접촉시킨 다음, 전류를 통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였다. 이에 따라 개 도살시마다 피고인이 개의 몸에 통전시킨 전류가 뇌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로도 흘렀을 것(뇌 부위 이외에도 다른 신체 부위로 많은 전기량이 분산되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도살되는 개가 이 과정을 통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4) 닭의 경우 전기수조를 이용한 전살법의 전제에서 “60Hz 싸인파 교류전류 이용시 전압에 관계없이 최소 10mA의 전류로 4초 이상 통전”, “날개 죽지 앞부분까지 충분히 입수되어야 함”이라고, 오리의 경우 역시 같은 전제에서 “60Hz 싸인파 교류전류 이용시 전압에 관계없이 최소 130mA의 전류로 4초 이상 통전”이라고 정해져 있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개의 주둥이 속에 위치한 혀는 침이 고여 있어 젖은 상태여서 전류가 잘 흐르는 환경이고, 혀 밑의 신경은 뇌신경 중 하나로서 뇌 부위에 바로 연결되며, 신경은 저항 값이 작으므로 충분한 크기의 전류가 뇌 부위로 흘러 개가 금방 기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혀 밑 신경은 신경관을 빠져나가 미주교감 신경줄기와 목 동맥의 배가(등)쪽 앞으로도 지나가는데, 이는 전류가 뇌 부위 이외의 다른 부위로도 흘러간다는 점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살기를 개가 물고 있는 상태에서 감전을 시켜 혀 부분 외에도 이빨, 주둥이 속 전체에 전류를 흘려보냈다. 나아가 피고인은 통전 과정에서, 그리고 개가 죽지 않은 채 쓰러진 후에도 전기가 잘 흐르도록 바닥을 물로 적시는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 앞서 (1)의 (나)항, (2)의 (다)항에서 본 대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동물도축세부규정에서는 돼지, 닭, 오리에 대하여 전살법은 기절 방법으로만 허용하고, 도살 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대해 방혈(放血)을 시행하여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세부 규정이 없기는 하나,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즉각적인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개가 완전하게 기절한 다음 방혈을 시행하여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개를 도살한 방식은 위 (나)항에서 본 것처럼 완전하게 기절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에 이은 방혈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앞서 본 대로, 구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방혈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서 진술하였다. 이는 말 그대로 구입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 개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은 개를 도살할 때 농업용 380V 전압을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는, 이 사건 농장에 20/380V가 공급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일반 가정용인 20V보다 높은 380V의 전압

을 사용해 전살법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법원 증인 우O종의 증언이나 위 (나)항과 같이 부적절한 도살 방식에 의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도살되는 개가 즉각적인 무의식 상태에 이르기에는 부족한 전류량만을 피고인이 통전시켰다(이에 따라 도살되는 개에게 격렬한 고통이 수반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전압이 비교적 높더라도, 피고인처럼 개의 입 부분에 쇠꼬챙이를 대고 감전을 시킬 경우 그 전류량 중 상당 부분이 뇌 부위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를 도살한 방법이 개에게 가하는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⁵⁾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개를 도살한 행위 형태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마) 이 법원 증인 우O종은 이 사건 도살 방법에 따른 고통의 정도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는 대발작이 있는가 여부로 적정한 도살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통전하는 전류량이 충분하다면 고통 없이 죽을 가능성도 있다)든가, 개의 도살 및 그 고통에 대한 연구 논문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위 (2)의 (나) 7)항과 같은 증언 등이 일종의 가정적 의견으로서 그 증명력이 희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개와 같은 포유류인 돼지 등에 대한 연구결과 및 앞서 본 미국 수의학협회의 지침 등을 바탕으로 한 우O종의 증언은,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통전하는 전류량이 충분하다면 고통 없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에는, 증인이 수의학 전문가 내지 과학자로서 엄밀한 실험 등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밝힌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이 사건과 같은 도살 조건·방식에 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물이 즉각적 무의식 상태에 이르지 못한 채 상당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살기를 통해 감전시킨 방식에 의하더라도 통전하는 전류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개들이 고통 없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5) 개의 인도적 도축(屠畜)에 관한 연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 앞으로도 그러한 연구가 진행될 기미도 찾기 힘들다.

한편 이 사건 전살기를 통해 도살된 개들에게 앞서 (2)의 (나)항에서 본 ‘후궁반장’ 내지 대발작의 징표가 나타났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들이 즉시 다리를 쭉 뻗은 모습으로 죽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증인 우O종이 후궁반장의 전형적 모습으로 설명한 요소, 즉 죽은 개가 고개를 뒤로 젖힌 모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목격했다는 사체의 모습이, 전형적인 대발작 내지 후궁반장의 형태였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 피고인은 감전 당시 개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앞서 (2)의 (나) 5)항에서 본 대로 부적절한 전류를 통전할 경우 개는 운동마비 상태가 될 수는 있지만 의식은 남아 있어 고통을 그대로 느낄 개 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이상, 이러한 진술 역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개를 도살하는 데 사용한 방식은, 위 나.의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국제협약이나 미국 수의학협회의 지침 등과는 동떨어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살 방식의 일부는, 그 지침 등에서 정면으로 금지·제한하는 방법에 해당할 여지도 보인다. 비록 개를 정면으로 규율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동물의 도살방법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른 동물도축세부규정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 방식은 그와 같은 법령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정한 것들과는 거리가 있다

{개에 대해서는 1976년경 그 도살 방법을 ‘전격법에 한한다’고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농수산부령 제640호, 1976. 10. 15. 일부 개정)이 1976. 10. 26.부터 1978. 6. 23.까지 일시적으로 시행된바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 방식이 전살법, 즉 ‘전격법’이라고 하여 곧바로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행위는 위 시행규칙이 폐지된 지 한참 후에 이루어졌다. 위 시행규칙은 ‘방혈’에 대해 ‘경동맥을 절단해서 방혈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인은 대부분의 도살에 있어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소, 돼지 등에 대한 도축 방법을 정한 국내 법령이나 위와 같은 국제적 기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본 대로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아무런 강구 없이 개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경우에 따라 극심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이라는 1차적

법익을 현저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진다. 만약 개에 대한 도축 방법이 성문법규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과 같이 개에게 고통을 가할 개연성이 있는 방식의 도살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법률의 입법 목적 및 법익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사) 이상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용한 도살 방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규범적으로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중략]

(다) 다음으로 제2주장, 즉 ‘잔인한 방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규정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동물보호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개의 도축방법이나 준수사항 등을 정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규칙, 이에 따른 동물도축세부규정에서는 소, 닭, 돼지, 오리 등의 도축 시 준수사항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 돼지는 동물보호법이 ‘동물’로 정하고 있는 ‘포유류’(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가목)로서 개와 상당 부분 유사한 생물학적 속성을 가진다. 나아가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등의 행위가 ‘동물학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잔인한’이라는 개념에는, ‘목을 매다는 등’이라는 대표적인 형태의 구체적 예시가 마련되어 있어 그 문언 해석의 기준을 상당 부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잔인’이라는 용어는 동물보호법 이외에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⁶⁾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 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 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제5조 제2항 제1호, 6)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⁸⁾ 등 다양한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다(위 각 법률들에서도, ‘잔인’의 개념이 그 하위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더 이상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대법원은 위 (1)항처럼, ‘잔인한 방법’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해당 도살 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 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그와 같이 ‘잔인한 방법’의 개념과 그 행태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고, 그 시대에 있어 사회의 인식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일이 구체적, 서술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입법적으로도 곤란한 면이 있다. 대법원은 그 밖에도 앞서 본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 247 판결 등을 통하여 ‘잔인한 방법’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방식을 판시하는 등, 이 사건 조항의 구체적 적용 방법이나 ‘잔인한 방법’이라는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계속 형성·축적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의 ‘잔인한 방법’이라는 구성요건은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적용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규정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인 변호인의 제2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으로서(결과적으로 이는 학대에도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7) 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 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중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8) 7)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에서 '○○농장'이라는 상호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년경부터 2016. 7.경까지 '○○농장'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쇠꼬챙이(이 사건 전살기)를 개의 주둥이에 갖다 대고 전기 스위치를 올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등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년경부터 2016. 7.경까지 이 사건 전살기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전기 스위치를 올려 감전시키는 ‘잔인한 방법’으로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죽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개를 약 5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도살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도살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른 개가 상당수에 이른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애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하였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포기한 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농장의 전(前) 농장주로부터 개 사육 및 도축 방법을 습득한 다음 영세하고 열악한 이 사건 현장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영업적 도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개 농장과 도축 관련 시설 일체를 폐업하여 더 이상 이를 운영하지 않는 상태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일용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형량을 정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예되는 형 : 벌금 100만원)

05. 재상고심(대법원) 2020. 4. 9 선고

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나.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면서 위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위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제4장 ■

참고 판례(식용목적 개 도살)

01. 대법원 1977도○○○(절도·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1977. 9. 28. 선고
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식품위생법위반(변경된 죄명 동물보호법위반))
2003. 4. 22. 선고
0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고정○○○○(동물보호법위반) 2011. 9. 15 선고
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동물보호법위반) 2014. 6. 13 선고
0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약○○○○(동물보호법위반) 2012. 11. 26 선고
06.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3. 2. 5 선고
07.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동물보호법위반) 2017. 11. 24 선고
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정○○○(동물보호법위반) 2013. 11. 6 선고
0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 2016. 9. 8 선고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6. 9. 8 선고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약○○○○(건축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동물보호법 위반) 2018. 4. 16 선고

01. 대법원 1977도○○○(절도·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1977.9.28. 선고

가. 판시사항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 참조조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1항 1호

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마.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꿩 기타 농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개 및 사양하는 사슴과 비둘기로 되어 있어 위 어느 규정에도 염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염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염소를 도살하거나 해체하는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1호 위반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염소를 도살한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살피건대 "양"과 "염소"는 다같이 우과에 속하는

반추하는 가축이기는 하나 같은 동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미루어서 보면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의 위 원심판단조치는 공인되는 바라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식품위생법위반(변경된 죄명 동물보호법위반)) 2003. 4. 22. 선고

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물보호법 제6조는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제12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다만, 제11조 제1호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해 식용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호 및 이에 따른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가축의 개념에 개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용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모든 경우가 면책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동물보호법 제6조의 ‘합리적인 이유’라 함은 전염병을 발생시킨 경우, 사람을 해치는 급박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식용의 목적이 바로 합리적인 이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제1조)임에 반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입법 목적은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제1조), 그 입법 목적이 서로 달라 식용을 목적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법 제6조 제1항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의 개념에 해당하는 동물을 도축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기한 식품공전에서는 식육을 소, 돼지, 양, 염소, 토끼, 닭, 칠면조, 오리, 꿩, 메추리 등의 식생활 관습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고기와 식용 가능한 장기류 및 부산물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 개념처럼 식육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반면, 우리나라의 식생활 관습이나 전통, 일반적인 정서상 개고기도 식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법리오해가 없다.

(한편, 검사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식육판매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되면서 개고기의 판매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어졌다는 사정도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동물보호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고정○○○○(동물보호법위반) 2011. 9. 15 선고

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또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2 13:08경 공개된 장소인 경주시 B에 있는 C시장 D 앞 처마 밑에서 개(백구)의 목을 매단 다음, 칼로 다리를 절단하고, 휴대용 부탄가스로 털을 태우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동물보호법위반)

2014. 6. 13 선고

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11:30경 공개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0-17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 건너편의 도림천로 자전거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나무에 밧줄을 걸어 피고인이 키우던 개의 목을 매달아 죽였다.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0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약○○○○(동물보호법위반) 2012. 11. 26 선고

가. 주형과 부수처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나. 적용법령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다. 범죄사실

피고인 ○○○은 아산시 ○○면 ○○리 ○○○번지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개를 도축하여 보신탕집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10.15 08:00경 위‘○○농장’ 작업장 앞에서, 오토바이 밧데리를 개조한 650볼트 전기전압으로 다른 잡종개가 보는 앞에서 20마리 개를 죽인 것이다.

06. 부산지방법원 2012고정○○○(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3. 2. 5 선고

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나. 범죄사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가축의 도살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9. 19. 14: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약 15평 면적에 중탕기 3대, 가스렌지 3대, 냉장고 1대, 주방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닭, 오리 등 가금류를 탈모, 절단, 수세하는 방법 등으로 도살하여 마리당 약 1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11. 10. 21.부터 2012. 10.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20마리 정도 도살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는 작업장에서 도축을 하였다.

(2)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향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충격기를 이용하여 개를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07.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동물보호법위반)

2017. 11. 24 선고

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06:아)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농장에서 다른 개가 보는 장소에서 전기 충격 도살의 방법으로 개 5마리를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개를 죽였다.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라.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연금수급자이다. 피고인은 2017.10.경 사육하던 동물들을 사단법인 광주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하였다.

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정○○○(동물보호법위반) 2013. 11. 6 선고

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를 하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부터 2013. 7. 24.까지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B에서 불상자들로부터 소매로 구입한 잡종견 수십 마리를 철장우리에 가두어 두고 일명 영양탕 집으로 알려진 수도권 수습여 곳의 식당을 상대로 "토종견 도소매, 육질과 신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배포후 식육을 위한 매출 주문이 들어오면 비닐하우스 작업장 내에서 쇠막대 (길이 60cm) 에 220볼트 전기를 흐르게

한뒤 잡종견 입에 넣어 죽이고 원통형 축출기에서 털을 뽑고 칼로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하고 목을 절단하는 등 전기가 흐르는 쇠막대와 도축용 칼을 이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뒤 식육으로 만들어, 안산, 시흥 등 수도권일대 영양탕집 50여 곳에 약 3개월간에 걸쳐 14.308kg (잡종견 500마리 상당) , 약 155,000,000원을 상당을 판매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였다.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지나항

0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 2016. 9. 8 선고

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나. 범죄사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 ·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 포장 및 보관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10:00경 전남 00군 00면 00길 00-00 임야(야산) 소재 피고인 운영 약 820㎡ 규모의 흑염소 축사시설에 탈모기, 육절기,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2마리를 도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한 달 평균 2~3마리, 명절을 앞두고는 하루 평균 2마리를 도살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는 작업장에서 도축을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루 평균 2~3마리의 개를 전기충격기 또는 칼을 이용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장부 사본, 도축현장 털 사진

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마. 양형의 이유

무허가로 도축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으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이중 벌금 전력 2회만 있는 점, 현재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2016. 9. 8 선고

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나. 범죄사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 •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 포장 및 보관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10:00경 전남 구례군 간전면 매재길 21-12 임야 (야산) 소재 피고인 운영 약 820m² 규모의 흑염소 축사시설에 탈모기, 육절기,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2마리를 도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2016.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한 달 평균 2~3마리, 명절을 앞두고는 하루 평균 2마리를 도살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는 작업장에서 도축을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루 평균 2~3마리의 개를 전기충격기 또는 칼을 이용하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라. 양형의 이유

무허가로 도축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으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이중 벌금 전력 2회만 있는 점, 현재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약○○○○(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동물보호법 위반) 2018. 4. 16 선고

가. 주형과 부수처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일십만)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나. 적용법령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7조, 제38조(벌금형선택),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다.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2.경 ○○시 ○○동 ○○○-○○ 소재 토지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대를 설치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개 사육시설 : 면적 60㎡ 이상(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시 ○○동 ○○○-○○ 소재 231㎡ 토지에서 철 구조물 등으로 개 사육장을 짓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정화조를 이용하여 위 사육장에서 개 40마리 상당을 사육하였다.

(3)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경 ○○시 ○○동 ○○○-○○에 있는 위 개사육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 1마리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충격의 방법으로 죽였다.

■ 제5장 ■

‘개 전기도살’ 사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01. 이 시대의 동물법
02. ‘일반 정서상 개고기도 식용이다’는 과거의 판결
03. 개 도살 판결
04. 개 도살 판결의 의의와 한계
05. 나가며

01. 이 시대의 동물법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시간, 먹는 것은 곧 생존이고 먹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채식으로는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었던 시기, 육식은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일부 종교적 예외를 제외하면 일상에서 육식은 도덕적 의문의 대상이 아니었다.

어느 시점부터 인간은 생존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육식을 하기 시작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낭만적인 영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이제 인간에게 먹는 행위는 생존과 동의어가 아니다. 많은 현대인의 관심은 ‘(생존을 위해)먹을 수 있을까?’(can)에서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how)로 이동하였다. 인간은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 가축의 품종을 개량하고 이 고기를 가장 싼 가격에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사육 체계를 ‘합리화’하였다. 육식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대의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의 ‘잔인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오로지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태어나서, 좁은 우리에 꼼짝달싹 못하며 덩치만 키우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도살이 되는 삶. 육식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러한 시스템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동물복지를 이야기한다. 동물복지는 좋은 것이며 여건만 된다면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는 유토피아에서나 있을 법한 고귀한 이상이 아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설령 가치관과 생각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지키도록 노력하자’고 받아들인 ‘중첩적 합의’의 영역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물복지는 우리사회의 최소도덕 또는 도덕적 출발선이다. 동물보호법을 뒷받침하는 이 같은 강한 도덕적 호소력은 곧 법적 강제력을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동물보호법에 들어 있는 법원리나 규칙이 현실과 동떨어진 ‘선비질’이라고 단정하고 함부로 왜곡·축소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기 위해선 해석이 필요하며 이때 어떤 해석이 올바른지 늘 명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의 해석은 그 시대를 사는 사회 평균인의 도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동물에 관한 전통과 관습이 무엇이든, 특정 집단이 동물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어 왔든 그 시대의 도덕적 공감대에 어긋난다면 이는 규제되어야 한다는 결단⁹⁾이 구체화한 것이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이 시대의 동

9)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이란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개념이다. 만약 전통의 근거를 과거에만 두는 복고주의적 전통개념을 취한다면 시대적으로 특수한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를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보편적인 문화양식으로 은폐·강요하는 부작용을 낳기 쉬우며, 현재의 사회구조에 걸맞는 규범 정립이나 미래지향적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기능하기 쉽다.”(헌재

물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을 해석하는 자는 자신의 해석이 단지 자신의 주관적 신념의 결과물에 불과한 것인지, 사회 평균인의 도덕성에 근거한 것인지, 나아가 사회 평균인의 도덕성에 근거한다고 포장한 주관적 신념의 결과물인지를 언제나 비판적으로 성찰하여야 한다.

02. ‘일반 정서상 개고기도 식용이다’는 과거의 판결

“가축의 개념에 해당하는 동물을 도축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한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식생활 관습이나 전통, 일반적인 정서상 개고기도 식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3. 4. 22. 선고 서울지방법원 2003노1839 판결)

당시 서울시는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개고기가 일반적 정서상 식용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언하며 개를 도축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제시도 없이 개고기가 일반적 정서상 식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법관의 생각’이 판결문에 그대로 투영된 것은 표면상의 문제이다. 당시 구 동물보호법 제6조는 ‘잔인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같은 법 제8조는 동물을 죽이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설령 개고기가 식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라 해도, 피고인이 도축한 방법이 잔인한 방법인지 또는 고통을 최소화 하였는지가 위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판단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법관은 물론 검사마저도 이를 다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어떠한 행위가 생존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라면 그 행위를 잔인하다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위 판결의 법관은 물론 검사조차 ‘육식 = 생존 = 합리적’이라는 사고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개고기 식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이상 그 방법이 잔인한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005. 2. 3. 2001헌가9 등, 판례집 17-1, 1, 17-18)

하지만 현대인 대부분은 ‘육식 = 생존 = 합리적’이란 사고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사고틀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며(제8조 제1항), 도살을 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상황 또는 불필요한 고통 회피 요건을 충족시키길 요구하는(제10조) 동물보호법의 자연스러운 해석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이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고정관념이었기 때문에, 동물에 관한 법률 사건을 만나면 부지불식간에 이를 전제로 법을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위 판결은 물론, 아래에서 살펴볼 개 도살 하급심 판결을 보면 법해석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법관들도 그 예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03. 개 도살 판결

가. 1심 판결

1심 판결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의 경우,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전살법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은 아니지만 현실상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3) 전살법 시행시 최소전류량, 통전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과 달리 개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다른 동물들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개에게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개를 죽이게 된 경위(식용목적), 개를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전살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

1심 판결은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했다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나 불필요한 고통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신적 상태인 고통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아가 그 정도가 불필요함까지 입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한편 1심 판결도 인정하듯 개의 경우 법령이 정한 도살 방법의 기준이 없으며, 잔인성이 특히 문제가 되는 도살 행위일수록 관련 증거가 남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

1심은 판결문에서 ‘개가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어떤 이는 비판을 하며 법적 제재를 요청하고, 다른 이는 현실을 전통 또는 관습과 연관지어 합리화하거나 최소한 묵인한다. 1심은 후자의 경우다. ‘개가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법률은 한정적으로 해석되고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전기쇠표채이를 사용한 도살은 본능적으로 잔인하다고 느낀다는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도살을 금지·처벌하는 동물보호법은 피고인이 개에게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했으며 이를 ‘검사가 입증’하는 한정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1심은 ‘개고기 식용을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이미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 전제는 ‘육식 = 생존 = 합리적’이라는 구시대의 사고틀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시대의 동물보호법 해석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2심 판결

2심 판결은 1심 판결의 결론을 따르면서도 잔인한 방법의 해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 잔인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 상대적이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2) (a)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아니한 도축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b) 동물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도살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명백한 경우(이하 (a), (b)를 ‘특별한 사정’이라 한다) 이외에는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검사는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에 대한 일반적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한층 더 나아가 검사는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2심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은 도살업계 종사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 사정이 ‘쉽게’ 그리고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도살방법은 잔인하지 않다. 도살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의 피고인은 거의 대부분이 도살업계 종사자란 점을 고려하면, 2심 판결은 ㉠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은 피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명백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두 가지를 동물보호법의 해석 원칙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를 보자. 일반 시민, 더 좁혀서 ‘개고기 식용을 용인하는 사람들’도 아니라 ‘개고기 업계 종사자’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집단으로 설정된 것은 매우 특이한 해석이다. 상관습처럼 관련업계의 종사자들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2심 판결은 개도살 방식은 상관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도살 업계는 영업의 규칙 및 방식을 자유롭게 형성·수정·폐지하는 자율적 공동체이므로 잘못된 영업행위에 대한 판단기준도 해당 업계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법감정을 토대로 한 동물보호를 위한 기본법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의 자정작용에 의해 잔인한 도살행위가 사라질 수 있었다면, 이를 금지·처벌하는 형벌조항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2심 판결은 사적자치를 원칙적으로 존중받는 사법(私法) 영역의 집단과 사회 평균인의 법감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서 규제가 요청되는 공법(公法) 영역의 집단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비유하자면 ㉠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셈이고, 그 고양이가 생선을 잡아 먹은 이 사건에서 ‘고양이는 원래 생선을 먹는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도 문제점이 작지 않다. 형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에서 말하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잔인한 방법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문장과 ‘피고인의 행위가 잔인한 방법인지는 명백하지 않다’는 문장은 명백하게 의미가 다르다. 인간의 고통조차 그 크기를 객관적으로 계량·측정하는 데 많은 논란이 있다. 하물며 동물의 고통을 계량·측정하여 ‘쉽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

하면 무죄라는 것은, 형법의 대원칙(‘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반된다고까지도 볼 수 있다. 아래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합리적 의심’은 국민의 법감정 등 계량화·수치화될 수 없는 요소까지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다.

1심과 2심 판결은 모두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는 사고를 공유하나 이 사고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다르다. 1심은 ‘개가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이 전통 또는 관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2심은 인간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용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이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본다. 2심 판결이 도살 업계 종사자를 소환하고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1심 판결보다 훨씬 엄격하게 해석한 것은 바로 이 차이에서 비롯된다. 개식용 문제에 관해 1심은 이를 소극적으로 수용하지만 2심은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아래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2심은 1심보다도 이 시대의 평균적인 동물보호법 해석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대법원 판결

(1) 과거 동물 관련 대법원 판결들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음에도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동물법 분야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법정에서 동물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 전반으로 충분히 퍼지지 않았던 탓도 물론 있겠지만, 동물법에 대한 논의 수준이 상급 법원에서 다룰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 더 주요한 이유일 것이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추해석이 금지된다는 등의 이유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¹⁰⁾ 및 ‘동물판매업자’¹¹⁾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판결, 피고인이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¹²⁾ 등 최근 동물 관련 대법원 판결들이 증가한 것은 동물법에 관한 논의 수준이 조금씩 성숙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판결들은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의 의미가 쟁점이어서 결론을 일반화하여 다른 동물 관련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1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

1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판결.

1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판결.

(2) 개고기 도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은 ①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② 사회통념 판단시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감정을 고려해야 하며 ③ 같은 도살방법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고 ④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가) 사회 평균인 vs. 특정 집단

2심 판결은 잔인한 방법을 판단하는 판단기준집단이 관련 업계 종사자라고 하였다. 앞에서 보았듯 2심 판결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리 또는 권한으로 본다. 때문에 도살 업계의 관점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도살 업계의 관점은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이라고 보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리 또는 권한으로 보는 2심 판결의 견해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감정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의미내용이 변천하는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¹³⁾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면 법관은 이를 이용하여 규범적 구성요건의 의미를 보충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⁴⁾

2심 판결은 잔인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 상대적이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음란, 저속, 공중도덕, 사회윤리 등¹⁵⁾과 비교할

13)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5 참조.

14)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판례집 8-2, 785, 793 참조.

15) 95헌가16(각주2) 결정이 규범적 구성요건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다.

때 잔인함에 대한 평가만 ‘지극히’ 주관적, 상대적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2심 판결은 암묵적으로 사회윤리 등 인간끼리의 규범과 사람과 동물 간의 규범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은 전자에만 이용되고 후자에는 이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잔인함은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잔인함이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의 대상이라는 것은 법관이 단순히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관은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 사회통념에 비추어 잔인하지 않다는 점을 규범적으로 논증해야만 하고, 2심 판결과 같이 잔인함에 대한 평가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이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사회통념이란 단지 우연하게 당대의 다수인이 공유하는 생각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원은 국민 설문조사를 한다음에야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말하는 사회통념이란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감정을 고려하는 객관적·규범적 기준이다. 생명존중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객관적인 것이며 설령 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옳을 수 있는 규범적인 것이다. 아무리 관대하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도살은 생명존중의 감정을 해친다. 때문에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잔인하다고 추정되며, 다만 불가피했으며 고통을 최소화 하였다는 사실(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이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구성요건 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심 판결은 검사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오히려 이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한다.

(다) 동물별 특성

1심 및 2심 판결은 모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들에 전살법이 규정되어있다는 이유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개에게도 전살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정한 동물보호법 제3조 제1호 및 제7조의 취지에 반한다. 같은 집이어도 닭에게는 계사(鷄舍)가, 소에게는 우사(牛舍)가 제공되어야 한다. 닭에게 전살법이 허용되므로 개에게도 허용된다는 논리는 개에게 계사를 제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여 1심 및 2심의 판단을 배척하였다.

(라)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개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인간과 함께 하였다고 추정된다. 개는 다른 동물보다도 더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보고서 또한 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반려동물일 뿐만 아니라 등록대상동물로 지정된 유일한 동물이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6.5%가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으며,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중 81.3%가 개를 반려동물로 삼고 있을 정도로¹⁶⁾ 현 한국 사회에서 개는 독특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위 (다)에서 살폈듯 동물보호법 제3조 제1호 등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1심 및 2심 판결이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들에 대한 전살법을 개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들과 개 모두 식용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1심 및 2심 판결은 개가 반려 동물로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파기환송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이 말하는 사회통념이란 개가 반려동물로서 지니는 독특한 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는 개식용이 동물보호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가 반려동물로서 지니는 독특한 지위를 고려하는 이상 개도살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라.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무의식을 유발하지 않고 동물을 전기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은, 극도로 혐오적이며

16)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수용해서는 안 된다

(2) 무의식을 유발하는 방법은 ① 머리에의 단일 전기 충격, ② 머리에서 몸통으로의 단일 전기 충격, ③ 머리 및 몸통에 대한 두 차례의 전기 충격 방식이 있는데, 동물의 입에 쇠꼬챙이를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도살 방법은 무의식을 유발하기에 부적절한 방식이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쇠꼬챙이가 닿는 혀는 뇌랑 가깝고, 일반 가정용 전압보다 높은 전기를 사용했다는 등의 주장만으론 무의식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무의식을 인도적 도살의 필요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제3항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에 따라 이제 무의식은 모든 인도적 도살의 필요적 요건임이 명백해졌다.

무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도살은 잔인한 방법이다. 파기환송 전 하급심 판결이라면 ‘무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미국수의학협회의 공식 지침에 따른 위 ① ~ ③ 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이 도살 당시 무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추정한다(②).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는 ‘무의식 상태’를 직접 입증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이 ① ~ ③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다. ① ~ ③ 방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상태가 유발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은 “쇠꼬챙이를 입에 물게 하고 물에 젖은 상태로 만들어 전류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은 대발작을 일으키기에는 부적절”하며, 피고인이 주장한 “전류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개들이 고통 없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의심에 이르지 못한다고 명시하였다(③).

결국 개도살업계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쇠꼬챙이를 개가 입으로 물게하는

방법 개가 무의식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반증하지 않는 이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되어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④).

04. 개 도살 판결의 의의와 한계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 심사보고서는 이 법이 ‘우리나라의 잔인한 개 도살행위에 대한 비난과 이의 금지를 위한 법 제정 요청이 있어 대외적으로 동물보호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8조 제1항 제4호)를 해선 안되며, 설령 불가피한 도살행위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고통 등을 주어서 안된다(제11조)고 쓰여있다.

선입견이 없는 사회 평균인이라면 이로부터 현행 동물보호법은 식용을 위한 개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추론하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법해석 전문가인 법관이 개식용은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거나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등의 이유를 붙여서 개도살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동물보호법을 해석하곤 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물론 2010년대 들어 식용목적 개도살행위를 동물보호법위반죄라고 판단한 일부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은 아니었다. 때문에 개도살업계에서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개를 도살하는 행위(제8조 제1항 제2호) 등 동물학대로 인정된 예외적인 상황만 회피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이 도살방법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다루게 되었을 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적법하다고 봄으로써 개도살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식의 과거의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대법원의 개도살 판결은 이 사건에서 잘못된 하급심 판단을 정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여태까지 ‘통상적인’ 하급심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해석의 흐름에 명백히 제동을 걸고 동물보호법 제8조는 물론 동물법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는 해석 원리 또는 기준을 정립했다. 즉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해석 패러다임을 전환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이자 향후 동물법 이론·실무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이다.

물론 위 판결은 식용목적 개도살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량 낮다는 점(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은 이 판결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잔인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더 나아가 식용목적 개도살의 적법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사법부가 입법부

의 권한을 잠탈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었다. 파기환송심의 취지에 비추어 현재 개도살업계에서 행해지는 방법 대다수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실제로 판결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전기봉을 사용한 개도살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¹⁷⁾ 그동안 법집행기관이 개도살에 관하여는 개입을 꺼려했던 점을 떠올려 보면, 이 변화된 법집행기관의 태도만으로도 이 판결의 중요성은 작지 않다.

05. 나가며

동물보호법 제정부터 위 대법원 판결까지 거의 30년의 세월이 걸렸다. 법은 사회를 선도하기보다 뒤따라 간다고는 말도 있지만, 늦은 것은 법이 아니라 이 법을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어쩌면 우리는 ‘동물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하며, 함부로 죽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르다’는 최소한의 도덕조차 법의 언어로 실천하는 용기가 부족했을지도 모른다. 애완동물보다 반려동물이란 단어를 더 많이 쓸 정도로 사회의 인식은 변화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의 언어는 여전히 ‘개고기는 전통’이라는 문장에 갇혀 있었다. 하급심 판결일지라도 우리는 패소를 두려워하여 이를 법원에서 다투기를 포기하고 이론적인 노력을 소홀히 했었는지도 모른다. 뒤늦은 대법원 판결이 한편 ‘진보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법조계가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덜 되어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 사회에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의 동물생명이 있다. 사람들은 많은 동물들의 삶과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우리는 이제 사람이 도덕·법적으로 이 동물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이다. 더 나아가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을 것이고 그 사이 수 많은 동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으며 생을 마감할 것이다. 내년이면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이 된다. 그 다음 30년에는 이 글과 같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17) 한겨레신문, 2020. 5. 14. “경기도, 전기봉으로 개 도살한 농장주 적발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944930.html#csidx419b596978b2c338d2d2259739f6ec3)

■ 제6장 ■

참고 자료

01. 동물단체 기자회견문, 성명서 등
02. 직무유기 검사 고소장
03. 개 전기도살 사건 관련 언론보도 내용

01. 동물단체 기자회견문, 성명서 등

가. [보도자료]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에 동물단체 판결파기 탄원서명 대응

지난달 23일 인천지방법원이 개를 식용목적으로 전기도살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동물보호단체들이 판결파기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선다.

24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동물관련 3개 단체는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대대적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인천지방법원의 무죄선고는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최악으로 후퇴시킨 희대의 나쁜 판결”이라면서 “시민 서명운동과 전문가들의 의견서 제출 등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학대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살법’을 임의로 개도살에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며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잔인한 방식’으로서 금지된 것이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수의학적으로 무죄판결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인 ‘개식용’ 문제를 ‘현실적’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것은 축산관련 법개정의 역사와 다수 국민들의 법정서를 무시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서명운동은 온라인(<https://goo.gl/zS8Usj>)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단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서명페이지로 이동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검찰측에서 항소,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배당된 상태이다.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나. [기자회견] “전기도살은 잔인하다!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더 잔인하다!”

(2017. 8. 22)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개농장에서 개를 전기로 도살한 피의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언컨대 인천지법의 판단은 잘못된 판결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중반 법개정 과정에서 ‘개’를 ‘식용목적 동물’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근거로 개식용을 위한 도살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명백히 입법자의 의지를 무시한 재량권 일탈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만 있다면’ 죽은 법률도 살려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입니까.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도살시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농장주가 자기 농장의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수십마리의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지저 잔인하게 죽였는데 어떻게 무죄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살법’이 아닙니다. 법상 전살법은 ‘전기로 기절시킨 뒤 방혈하는’ 방법입니다. 즉,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로 의식을 잃도록 하는 것이며, 운송 및 도축전 대기 등 법적 도살과정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개과 동물의 경우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전기 도살이 지극히 잔인한 방식이라는 게 국제적인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개과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이 있으니 개를 전기로 죽여도 무죄라는 논리는 형법 66조가 사형의 방법으로 ‘교수형’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사인이 임의로 누군가를 목매달아 죽여도 된다는 황당한 주장과 매한가지입니다. 개들의 이빨자국 가득한 개농장의 쇠꼬챙이들을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전살법’이 잔인하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기로 죽여가는 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쇠꼬챙이가 납작해지도록 이를 악물었는지 한번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수의사회도 최근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기도살행위 관련 동물보호단체의 질의에 대하여 지난 1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는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법령에 개에 대한 도살 기준이 없고,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

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은 잔인한 동물학대행위’라는데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오직 인간의 이익, 그것도 잔인하게 키우고 잔인하게 도살하여 돈을 버는 극소수의 인간을 위한 잘못된 판결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불과 며칠전에도 부산에서는 살고 싶어 철장을 탈출한 개의 사지를 묶은 뒤 수백미터를 질질 끌고 가서 죽인 끔찍한 동물학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배경에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습니다. 3개 동물단체가 이번 판결의 파기를 촉구하기 위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진행한 서명운동에 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열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2심 재판에서는 다른 생명존재들에 대해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예의, 그리고 현행법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잘못된 판결이 파기되고, 잔인한 동물학대자에 대해 응분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다. [기자회견] “정당한 사유 없는 도살은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위반자를 처벌하라”(2017. 9.26)

자신의 개농장에서 개를 전기로 죽게 한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의 항소심이 검사의 추가 입증이나 의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동물학대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하고 너그러웠던 그동안의 판결이 재현되지 않을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8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명시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제외함으로써 식용 목적으로 도살, 유통,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용 목적 동물에서 개를 제외한 것은 더 이상 개를 식용가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이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이 있다는 점과 ‘개를 식용으로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가 식용가축에서 빠져 있긴 하나 법에서 식용목적의 다른 가축에 대해 전살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도축과정에 있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로 의식을 잃

게 함으로써 ‘덜 잔인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덜 잔인한 방식’의 도축과정은 상차로부터 운반, 하차, 도살전 계류, 도살장소로 이동까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의식소실’에 이르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을 원칙으로 모든 과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전살법이라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전류량, 통전시간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아무렇게나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동물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살’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살법’이 아닐뿐더러 전기를 통해 기절도 아니고 죽이는 행위는 전기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현실’이라는 판결의 근거 역시 납득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현실에 존재한다면 모든 행위들이 용납되는 것이지요? 설사 개식용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개를 식용하는 현실’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처벌하고 있습니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의 도축은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입니다. 법률상 관련 규정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 조항들을 적용하면 될 사안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미루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번 사건이 2심에서조차 무죄로 판결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에 명시된 도살방법을 채택한다면 누구나 어떤 동물이든 잡아 죽여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묵인하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법원입니다. 부디 2심 재판에서는 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상기해 현행법에 따라 무죄판결이 파기되고, 동물학대자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라. [탄원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파기하고, 가해자 처벌해야(2017. 9. 26)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소위 ‘인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슴 졸이며 이 사

건의 추이를 지켜봐온 우리 단체들은 검사의 추가 입증이나 의견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항소심 재판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님께서서는 약 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을 검사와 변호사 모두에게 던지셨습니다. 재판장님께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물으신 다섯 개의 질문에 대해 비록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의 동물복지와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개고기 유통, 판매, 조리 등을 허용 혹은 금지하는 법령의 존재 여부

대한민국에서 ‘개’가 식용으로 도살, 유통, 판매, 조리될 수 있었던 시절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가축’으로 분류했던 시절에는 개의 도살과 유통, 판매 등이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식용목적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한지 벌써 40여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를 식용가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이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2) 개의 도축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법령의 존재여부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처벌하고 있습니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의 도축은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입니다.

(3) 개 도축의 기준과 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령의 존재여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를 식용목적 가축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당연히 개 도축의 기준과 방법 등을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는 안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개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뿐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만이 현행 법령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기간동안 주인에게 반환되지 못한 유기동물은, 그 소유권

이 시군구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동물에 대해 국가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조치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개 도살의 주체로 ‘수의사’를 그리고 도살 방법은 ‘수의사의 판단에 따른 인도적 조치’를 수용한 것입니다.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조치로서도 개가 죽음의 공포를 인지함 없이 가장 단시간에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익숙한 관리자의 품에 안겨 정맥주사 마취 후 독극물로 절명에 이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개가 자신의 죽음을 단시간이나마 인지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챔버(개를 특정 공간에 넣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절명하게 하는 방식)마저도 의식을 잃기까지 개가 밀폐 공간에서 공포와 고통을 느낀다는 지적으로 철폐되고 있습니다.

(4) 가축의 도축시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의 구체적 사례

인간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동물을 죽이는 모든 행위는 잔인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살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여 고통을 줄이고자 합니다. 인간이 일상적으로 죽여 먹고 있는 가축에 있어 비교적 인도적인 도살 방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동물이 도살되는 순간까지 상처, 운반, 하차, 도살전 계류, 도살장소로 이동까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도록 이동경로를 고려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도살되는 순간에 이르러야 하며, 이순간에도 ‘의식소실’과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을 원칙으로 모든 과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전살법이라도 축종에 따라 전류량, 통전시간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 비교적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농장 돼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도하는 데로 차를 타고 내리며 계류장에서 있다가 길을 따라 동료와 함께 가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이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 방식입니다. 즉 동물이 농장을 떠나 식탁위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이 도살 과정’이며 ‘제 과정들이 총체적·유기적으로 계획되어 마련되고 점검’되어야만 비로소 ‘잔인하지 아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세히 규정하여도 현재 한국에서 전기감전 후 도살되는 돼지의 10%정도가 의식이 있는 채로 해체되는 문제(도축 직전의 소·돼지 “제발 기절하게 해주세요”, 한겨레, 2012.2.10)가 있으며, 더 나은 도살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연구가 OIE(세계동물보건기구)수준에서 국가들의 협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도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죽임이 허용되는 가축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관련 시설과 도살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도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5)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개가 ‘가축’으로 분류된 데 대한 입장

축산법은 ‘동물사체의 식용’ 목적 뿐만 아니라 젖, 알, 꿀과 이들의 가공품등 다양한 축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규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동물’ 즉 진돗개, 풍산개와 같은 동물들의 번식과 사육도 규율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 축산법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축산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용목적의 가축’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개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은 이미 40년전부터 개를 ‘식용가축’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각각 규율하는 ‘가축’의 범위에 개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이같은 이유와 맥락에서 다른 것입니다.

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에 걸릴 수 있으며, 조류독감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개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인수공통전염병 등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감수성 동물인 이상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등재된 것은 전염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가축의 정의와 축산법상의 가축의 정의는 거의 동일하며 꿀벌도 포함되는 개념이며,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조류독감 방역을 위해 고양이와 기러기를 추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식용 도살 유통을 규정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가 제외되고 상기 2개의 법에는 등재되어 있는 것은 해당 동물 즉, 개가 식용 가축이 아님을 보다 공고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1심 재판부는 ‘개를 식용으로 하는 현실’을 말씀하시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축산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법에 의한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법원의 고충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며 지지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관련 규정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 조항들을 적용하면 될 사안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미루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저희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법이 형해화될 때, 그를 막아줄 최일선에 법원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왜 이미 존재하는 법률들을 애써 외면하고 새로운 논리를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2심에서조차 무죄로 판결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않다면 어떤 동물이던 아무런 방식으로나 잡아 죽여도 상관없다는 무법천지가 될 것

입니다. 길고양이를 잡아다 전기로 지져 죽인들 과연 무슨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무슨 동물이던 잡아먹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되레 과도한 육식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우리는 야만적인 수렵시대의 관습에 얽매어 살아야 하는 것인지 역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부디 이러한 탄원인 단체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시어 가혹한 학대의 지옥을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정의의 보호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기도수의사회, 사단법인 고유거,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 집, 녹색당, 대전유기견사랑쉼터, 대한동물사랑협회, 도브프로젝트, 동물과함께행복한 세상,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따뜻한엄마고양이,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시흥엔젤홈, 애니멀피스코리아, 용인시동물보호협회, 위드올애니멀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안시유기동물보호소동아리, 천안아산반사모, 코리안독스KDS, 킥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총 28개 단체)

마. [성명서] 차라리 동물보호법을 폐기하라! (2017. 9. 28)

法不阿貴 繩不撓曲(법불아귀 승불요곡). 법은 귀한 사람이라 해서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굵은 곳이라 해서 굽혀 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200년 전쯤의 사람, 한비자가 법의 공정함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법이 현실을 핑계대며 스스로 굽혀 생명의 존엄함과 정의의 공평함을 해하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2017년 9월 28일,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사법부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너무도 참담한 심경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소위‘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개를 먹는 현실’을 운운하며 동물학대자에게 면죄부를 준데 이어, 2심 판사는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들이 무참히 난도질을 당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오늘 오전 11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괴이한 주장을 전제로, “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은 ‘목을 매

다는 등의 방식만큼의 고통유발'이 확인되어야 하나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동물단체들과 변호사단체들은 해외의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이 잔인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자신의 고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동물의 처지를 악용, 조롱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물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법이 정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식용' 목적이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가축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죽이는 방법의 잔인성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어느 법령에도 '동물은 죽여도 된다'고 허용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법에 문외한인 일반 시민들보다 이 재판을 진행한 판사, 검사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다시 개를 전기로 잔인하게 도살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이 없거나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검찰과 판사가 무시하고 왜곡하여 벌어진 사법학살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동물의 죽음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다'는 법원의 비겁한 인도주의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전근대적 야만성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죽은 것은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동물보호법입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해외전시용일 뿐 국내에서는 휴짓조각만도 못하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불의의 어둠을 거둬내는 용기'와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국민 앞에 섰었던 검사가 이번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변호사단체들과 동물보호단체들, 그리고 3만 명 넘는 시민들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모두 다섯 번이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안 담당 검사는 서면 한 장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공판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판사에게 스스로 그러겠노라 답했던 검사는 결국 법정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사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동물학대의 진정한 배후세력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운다'는 법관의 기개, 우리가 가졌던 마지막 희망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두 번 맞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이 현실 앞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법’이 ‘법의 현실’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라”입니다. 없는 법을 만들어 달라거나 있는 법을 왜곡하여 억지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원칙만이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을 지킬 자신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폐지하고, 차라리 우리가 야만적인 수렵시대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똑똑히 오늘의 판결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동물보호법을 어떻게 말살하였는지를 전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딛고 일어나 다시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고통 속에 살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동물들, 그 생명의 존엄함과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바. [보도자료] 전기도살 무죄 선고’는 오직 동물학대자에만 이익인 판결 (2017.12.22)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사건과 관련,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대표 박운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등 3개 단체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로부터 2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다.

동변은 의견서를 통해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사건이 “동물도, 사람도, 실정법에 충실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판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어떤 법령이 특정 동물 종에 한하여 규정한 도살 방법을 다른 종에 함부로 유추적용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이같은 원칙을 어기고 1심 판결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28일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아니한 도축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물의 도살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동물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도살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이 명백하여 그것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에 겪는 고통 등의 정도에 이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년에 30마리 정도의 개를 전기로 도살한 피고

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동변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해석기준을 사기 범죄자들에게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재판부가 동물보호법의 대표적 수범 집단이자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뒤에 숨어 법해석 의무를 회피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동변은 서울고등법원이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고통을 느끼는 주체가 인간이 아닌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의 고통을 인간이 인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의 상상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명백하게 주장하라는 것은, 어떤 정황증거나 합리적 추론을 제시해도 ‘훨씬 더 크’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시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요구”라고 밝히고,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 어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상의 입법행위”라 주장했다. “원심이 개 도살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동물 종에 대한 규범을 아무런 논증 없이 유추 적용한 것은 동물보호법의 기초 원리에 대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동변은 결론을 통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차적으로는 그러한 행동이 인간 사회의 도덕에도 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늘이고 줄인다면 동물의 생명과 이 사회의 도덕성은 잔인하게 토막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3개 동물단체는 이와 관련 “인간의 언어로 고통을 호소할 수 없는 동물은 이 땅에서 절대적 약자이며, 법은 약자의 편에서 도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이기심이 아닌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동물학대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사. [성명] 대법원 역사적 판결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 잘못돼"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하급심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했으니 다시 재판하여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은 인천 소재 개농장주인 A씨가 수년에 걸쳐 수십마리의 개를

전기로 도살하여 식용으로 판매한 데 대하여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거나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법관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동물보호법의 설치목적과 존재의미를 형해화한 것으로 ‘동물학살판결’이라는 거센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이 사건 고발자는 아니나 법원의 최초 무죄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소송에 개입, 3만여명 시민탄원서명 제출, 수차례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전기도살이 왜 잔인한 범죄행위인지를 적극 주장했으며, 수회의 기자회견과 2심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등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꾸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드디어 오늘(13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동일한 도살방법이라도 도살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물질, 도구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이용방법,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라고 밝혔는데, 이는 하급심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잔인함을 평가했던 것에 비해, ‘동물의 입장’에서 겪는 고통의 정도가 기준이어야 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리에도 정확히 부합할 뿐더러,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쉬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법리의 오해를 넘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괴이한 논리를 구성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동물학대를 자행한 피고인

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법정의’를 외면했던 하급법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를 특정하여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사건의 맥락상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법해석에 있어서 이부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즉,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동물학대에 대한 한국사회의 성숙도, 이제는 개식용을 종식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개를 키워 도살하고 취식하기까지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육견업자들은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도견장(개도살장)에 의존해 왔고 이같은 현실을 돌아볼 때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며, 1년 넘게 진행된 소송진행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개진을 해주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함께 마음 졸이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던 시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판결 하나로 한국에서 개식용이 종식될 것이라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에서도 ‘개식용 종식’은 몇몇 ‘동물애호가들’의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동물정책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임을 구체화 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표창원법을 포함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개식용 종식의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겨 단 한 마리의 개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아. [기자회견] 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동물학대, 서울고법은 대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개 전기도살을 처벌하라! (2018.11.15)

개 전기도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연이은 무죄선고 뒤 과연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 왜 존재하는가 망연자실 했던 나날을 돌아보면 새롭다. 다행히도 이 선고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는 지 1년 뒤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

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지난 9월 13일 파기환송돼 다시금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개 전기도살 사건은 개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농장에 있는 도살 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거나 입에 물려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하여 동물을 학대한 사건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6월 23일 개에 대한 전기도살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도와 있는 만큼 동물보호법상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해 9월 28일 동물보호법은 죽이는 행위 자체가 아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경우만 처벌한다며 이에 따라 아무나 개를 임의로 죽여도 그 방법의 잔인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학대 처벌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13일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을 다시 파지도록 했다. 즉,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도살자들은 쇠꼬챙이, 파이프 등 전기가 흐르는 물체를 아무거나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이용해 마구잡이 도살을 해왔다. 이런 행위 전반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 처벌조항인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따라서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는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과 다름없다.

우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1심 선고 소식이 알려지던 시점, 이 사건을 최초 인지하고 즉각 대응을 시작했다. 개식용 산업으로 인해 한해 1백 만 마리 넘는 개들이 전기도살 등의 방법으로 불법 도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선고가 가진 심각성을 바로보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은 개에 대한 전기도살이 고통사임을 피력해 왔으며 이것이 축산동물의 도살방법으로 명시된 전살법과도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꾸준히 알려왔다. 사제 전기쇠꼬챙이로 개들을 맨 정신에서 죽을 때까지 감전시키는 것이 어

찌 전기충격으로 의식을 잃게한 뒤 방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단 말인가. 단순히 전기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동물의 고통을 어찌 축종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생명존중 정신에 따라 동물을 올바르게 보호해야 하는 법이지 동물을 죽여도 되는 법이 아니다. 오늘도 우리는 재판부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해 우리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개 전기도살이 잔인한 방법인지 아닌지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 잔인함을 규정하는 사회적 통념은 또한번 변했다. 한국 사회는 개식용 종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도살을 하지 말아달라는 시민들의 청원은 단기간에 40만명을 훌쩍 넘었다. 지난 8월 10일 청와대는 40만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대한민국이 장차 개식용 산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임을 분명히 못 박았다. 청와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개가 축산동물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국회에는 개식용 종식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서울고등법원에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개 전기도살 처벌하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자. [논평] 인천개전기도살 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2019.12.19)

동물자유연대는 소위 ‘인천 개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오늘 19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소위 ‘인천 개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동물보호운동의 전기를 마련했다.

재판부는 전살법을 사용할 경우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상태로 이르는 조치가 필요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 말한 인도적 도살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의 뇌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전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아 개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개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가 필요함을 피력하며, 피고인의 방식은 국제협약 미국수의학지침과 동떨어진 방식이고, 방혈 또한 이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100만원의 벌금

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해당 사건은 명백한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 되었다. 당시 대법원은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가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극히 보편적인 사회적 인식에 근거해 무죄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시민, 동물단체,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에 화답했다.

그동안 시민들과 동물단체들은 ‘인천 개전기도살 사건’에 있어 끊임없이 올바른 판결을 요구해왔다. 2016년 10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약식명령청구가 접수되었으며, 그해 12월 2일 해당 지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의 항고로 2017년 2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돼 같은 해 6월에 무죄선고가 내려지고, 같은 해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시 대법원으로 넘겨진 사건에 대해 이듬해인 2018년 9월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물단체들은 인천지법에서 1심 무죄판결이 난 이후 해당 사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2심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단체, 변호사, 수의사 등이 5번이나 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재판부가 관련 법령이 있는지 잔인한 도살인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선고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검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노력, 그리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오늘의 판결을 이끌었으며, “자신이 소유한 동물은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법원을 판단을 바로잡는 시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고, 가야할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여전히 동물은 스스로는 자신의 고통조차 호소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최약자이다. 동물을 동물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요, 궁극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에게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며, 생명을 생명답게 대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을 길이 기념하며, 고통 속에 살다 고통 속에 죽어

간, 또 현재도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위해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는 걸음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는 전기도살에 대한 시민제보 운동을 벌이고, 대대적인 감시와 신고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우리사회에서 식용 목적의 개도살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차. [보도자료] 동물자유연대, ‘개 전기도살 사건’ 피고인 상소에 시민 탄원 진행

- 피고인, 이례적 선처에도 또 다시 상고
- 동물자유연대 “늪우침 없는 피고인 엄정 처벌 받아야”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지난해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한 피고인이 엄정한 심판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탄원을 진행한다.
 - 지난 해 12월 19일 10번의 파기환송심 공판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도살 방법의 잔인성과 그 허용 여부는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 동물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개농장을 폐업했고, 건강상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유죄라 판단하면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 선고 유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난 해 12월 23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며, 동물자유연대는 “이례적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소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늪우침이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실제 2017년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충격의 방법으로 죽인 유사사건의 경우에도 2018년 4년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 동물자유연대가 이렇듯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의 유죄 판결에도 잔인한 전기 개 도살 행위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단속 결과, 약 2년 간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불법 도살한 경기 남양주시 소재 개 농장을 적발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의 엄중한 처벌은 반복되는 개 도살을 근절하고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김포의 개 농장에서 2011년부터 약 5년간 150여 마리 개들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잔인하게 도살한 사건이

다. 2016년 10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약식명령청구가 접수되었다. 그해 12월 2일 해당 지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의 항고로 2017년 2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돼 같은 해 6월에 무죄선고가,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시 대법원으로 넘겨진 사건에 대해 이듬해인 2018년 9월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게 되었고, 긴 법정공방 끝에 지난 해 12월 19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 탄원 서명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https://www.animals.or.kr/campaign/friend/50256>) 또는 서명 페이지 (<https://forms.gle/tXRn5QPM1rjMV4Rq5>)를 통해 피고인이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길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민 탄원서는 대법원 재판부 지정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카. [보도자료] 대법 다시 간 ‘개 전기도살 사건’에 시민들 “엄정처벌 해달라” (2020.02.06)

- 동물자유연대 시민 6천여 명 탄원서 제출
- “상고심의 엄중한 처벌이 반복되는 개도살 근절의 시작점될 것”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6일, 지난해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탄원서를 제출했다.
- 탄원 서명은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6천여 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하여 여전히 식지 않는 사회적 관심과 피고인의 뉘우침 없는 태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 해당 사건은 명백한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되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전기로 개를 죽이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리했으며, △동일한 도살 방법이라도 도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물질, 도구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이용방법,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지라는 점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12월 19일 유죄를 선고했다.

○ 다만 피고의 오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개농장을 폐업했고, 건강상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유죄라 판단하면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며, 지난 1월 30일 대법원 제1부에 상고심 사건이 임시 배정되어 본격적인 심리 진행을 앞두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는 “이 재판의 결과는 우리 사회 잔혹한 개도살 근절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올바르게 정당한 판단으로 수많은 생명을 잔인하게 도살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하여, 여전히 식용 목적으로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개들의 고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이번 전기도살 사건에 반드시 유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김포의 개 농장에서 2011년부터 약 5년간 150여 마리 개들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잔인하게 도살한 사건이다. 2016년 10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약식명령청구가 접수되었다. 그해 12월 2일 해당 지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의 항고로 2017년 2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돼 같은 해 6월에 무죄선고가,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시 대법원으로 넘겨진 사건에 대해 이듬해인 2018년 9월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게 되었고, 긴 법정공방 끝에 지난 해 12월 19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타. [탄원서] ‘죄를 반성하지 않는 후안무치 개 전기도살자’ 엄정 심판 탄원 서명

지난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경부터 2016년까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들의 입에 넣는 방식으로 수년간 150여 마리의 개들을 고통 속에 잔혹히 도살한 ‘개 전기도살 사건’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죄질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은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매우 낮은 형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다시 상소를 하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피고인의 후안무치한 행태

에, 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법원이 올바르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수많은 생명을 잔인하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파.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2020.04.09

2020년 4월 9일, 오늘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개 전기도살 행위가 잔인하며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지난해 파기환송심 결과가 육견협회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4년 만에 유의미한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판결이자, 동물의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선언이라고 보며 환영한다.

개 전기도살 1심 무죄선고가 알려진 이래 우리는 수년간 1,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자 3만여 명 시민탄원서명을 제출하고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는 등 거듭된 노력을 해왔다. 시민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엔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전기도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2019년 12월 19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잘못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육견협회의 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가게 되었으나,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6천여 명의 시민이 탄원서명으로 함께해 마침내 본 사건은 오늘 유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피고인 개농장주는 2011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했다. 개농장주는 육견협회의 지원을 받으며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방식으로 순식간에 도살을 마쳤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수의학 전문가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것은 무의식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 내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사제 전기쇠꼬챙이를 사용, 전기도살로 지칭키도 어려운 본 도살 행위는 결코 인도적 안락사가 될 수 없으며 오늘날의 상식에도 반하는 동물학대에 지나지 않는다.

국내 개농장은 3,000곳 이상이며 개식용 산업으로 한 해 도살되는 개의 수는 1백만

마리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명백한 동물학대임에도 개농장 한 편이나 불법 도살장에서 개들은 암암리에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당해 잔혹한 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개 전기도살 학대의 실체가 재판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분명히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제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행위가 극심한 고통 유발을 피할 수 없으며, 현행 법상 목을 매달거나 때리는 것과 같은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에 해당함을 입증받게 되었다. 경찰도 이번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의 불법 개 도살을 엄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오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 도살 행위를 막고 불법 개농장 철폐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개 전기도살 사건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지난 4년간에도 이를 위한 국민의 질문과 요청은 끊임없었다. 2018년에는 개를 포함한 동물 임의도살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과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각각 20만을 넘겨 청와대의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 답변까지 끌어냈으나 행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답답함이 어디 그뿐인가. 20대 국회에서는 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으로 불리는 축산법 개정안(개를 가축에서 제외), 동물보호법 개정안(임의도살 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음식쓰레기 동물급여 금지)이 국민의 간절한 바람 속에 발의되었다. 그러나 3개의 법안 모두 얼마남지 않은 국회 임기종료로 인해 현재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어 참담하기 그지없다.

국회와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사회적 합의’라는 공허한 말만 반복하며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하루에도 수천마리 개들이 버젓이 불법 도살되고 있으며 동물학대 범죄는 방치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지만 실상은 현행법상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동물학대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소수 이익 집단에 불과한 육견협회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하여 범죄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법을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적극 방지해야 할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도 개 도살은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발병 원인으로 야생동물의 거래와 도살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중국 당국은 야생동물의 식용과 거래를 금지한 바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3월 31일 중국 선전시는 식용목적으로 지정된 가축을 제외한 동물의 식용을 전면금지하는 강력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개와 고양이도 식용 금지 대상에 포함돼, 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국은 세계유일의 ‘식용’ 목적 개농장이 방역의 사각지대로서 존재하고 있는데다 재래 개시장에서 여전히 다양한 살아있는 동물들을 마음대로 거래하고 도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더이상 미루지 말고 개식용 산업

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잔혹한 개 도살의 굴레를 끊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쇠꼬챙이 도살은 유죄이며, 모든 개도살은 동물학대로서 사라져야 한다. 개식용을 종식하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02. 직무유기 검사 고소장

가. 고소인 :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나. 피고소인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ㅇㅇ

다.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이라 일컬어지는 서울고등법원 2017노2030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담당 검사로서, 재판부의 서면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함으로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형법 제122조를 위반하였습니다.

마. 고소이유

피고소인은 이른바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의 항소심 담당검사이며, 이 사건 항소심은 2017.08.22.부터 2017.09.28.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은 인천 소재 개농장의 농장주가 자신의 농장에서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집어넣고 전기를 통하게 하여 수십마리 개를 죽인 사건으로서, 1심(인천지방법원 2017고합70) 재판부는 이를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도살’로 보지않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측이 이에 불복 2017.06.29.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무죄선고에 대한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항의 및 규탄이 잇따랐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항소심 담당검사로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를 처벌, 사회적 정의를 수호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이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2017.09.19.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2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판사로부터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받았고, 이같은 판사의 요구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제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선고기일인 2017.09.28.까지 이같은 판사의 의견제출요구에조차 응하지 않았으며(증제1호증), 결국 해당사건은 항소기각, 원심유지의 결론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등 참조)인 바, 검사로서는 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정에서 스스로 판사에게 의견제출을 약속하였던 바 자신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형법 제122조를 위반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피고소인의 이같은 직무유기는 재판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임에 분명하고, 해당 사건이 2심 재판에서 정의롭게 바로잡히기를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또한 기소독점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상 검사의 판단과 의무이행만이 형법상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해악이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바. 결론

고소인의 행위는 한국 동물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의 재판진행에 있어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서 그 행위의 해악성에 비추어 보면, 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의 이유로 본 건 고소에 이르렀으니, 피고소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쳐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 개 전기도살 사건 관련 언론보도 내용

가. 1심

-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법원 "동물 학대 아니다" 연합뉴스 2017.07.09.
-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법원 "동물 학대 아니다" SBS 2017.07.09.
-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법원 판결은 무죄? 매일경제 2017.07.09.
-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무죄'...법원 "동물 학대 아니다" MBN 2017.07.09.
-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법원 "동물 학대 아니다" SBS 2017.07.09.
- 개 쇠꼬챙이 감전시켜 도살...‘잔인한 방법’ 범위는? 헤럴드경제 2017.07.09.
- “전기로 개 도살 방식, ‘동물학대’로 볼 수 없어” KBS 2017.07.09.
-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해도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허프포스트코리아 2017.07.09.
- 법원 “전기로 개 도축 ‘전살법’ 동물학대 아냐” 한국일보 2017.07.09.
-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법원 "동물학대 아니다" 연합뉴스TV 2017.07.09.
- 전기로 개 도살 무죄..."다른 가축 도살도 잔인" YTN 2017.07.09.
- 전기 꼬챙이로 개 도살...법원 "동물 학대 아니다" YTN 2017.07.09.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 법원 “동물 학대 아니다” KBS 2017.07.09.
- 전기로 개 30마리 도살한 농장주 무죄 매일경제 2017.07.09.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매년 30마리 도살 농장주 ‘무죄’ 경향신문 2017.07.09.
- 법원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동물 학대 아냐" 아시아투데이 2017.07.09.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법원 무죄 선고 OBS 2017.07.09.
-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30마리 도살 농장주 ‘무죄’ 노컷뉴스 2017.07.09.

-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법원 "동물 학대 아니다" 경기신문 2017.07.09.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법원 "동물 학대 아니다" 중부일보 2017.07.09.
- 전기로 개 도살 무죄..."다른 가축 도살도 잔인" YTN 2017.07.09.
- 法 "전기충격 기절후 개 도축, 동물학대 아냐" 경인일보 2017.07.09.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동물 학대 아냐 경기일보 2017.07.09.
- 전기로 개 도살 농장주에 무죄 판결...법원 "동물학대 아니다" 서울경제 2017.07.09.
- 전기 도살, 순천개는 안되고 인천개는 되나 인천일보 2017.07.10.
- "개는 식용 가축이다"...전기로 개 도살한 농장주 무죄 판결 논란 세계일보 2017.07.10.
- [판결] 전기충격기로 개 도살한 농장주 "무죄" 법률신문 2017.07.10.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법원 '무죄' 선고 올치올치 2017.07.10.
-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 뉴스1 2017.07.10.
- 카라·동변,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되어야" 올치올치 2017.07.10.
- ‘전기 개 도살은 무죄’ 판결에 카라, “한국 동물복지 수준 나락으로” 스포츠경향 2017.07.10.
-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에 동물단체 반발 한국일보 2017.07.10.
- 난감한 개 도살 처벌...法 판결 "그때 그때 달라요" 아시아경제 2017.07.12.
- 개, 가축인가 반려동물인가 '논란' 농민신문 2017.07.21.
-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에 동물단체들 탄원서명 돌입 뉴스1 2017.07.24.
-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에 동물단체 판결파기 탄원 서명 운동 올치올치 2017.07.24.
- 인천지법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 판결 파기위해 탄원 참여해주세요 데일리벳 2017.07.24.
-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에 동물단체 판결파기 탄원 서명 대응 광주드림 2017.07.24.
- 식용 위한 개 도살 대부분 불법=현행 위생관리법상 도살 대상에 개 포함안돼... 파이낸셜뉴스 2017.07.24.

도심에서도 개 도살, 식용견 농장만 2800여곳.. 부끄럽... 파이낸셜뉴스 2017.07.24.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하라"... 동물보호단체 서명 운동 경인일보 2017.07.24.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 전기충격기로 개 도살한 농장주 "무죄" 법률신문 2017.08.01.

개 도살은 학대 vs 아니다...오락가락 法 채널A 2017.08.06.

동물보호단체, 서초동 법조타운 보신탕 반대 캠페인 스포츠경향 2017.08.10.

철창에 갇혀 복날마다 죽어가는 개들..."더이상 안돼요!" 뉴스1 2017.08.11.

말복의 두 풍경 "개식용 반대"vs"영업방해 마라" 뉴스1 2017.08.11.

동물보호단체들이 복날에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몰려간 이유 한겨레 2017.08.11.

동물보호단체 "개 식용, 동물 학대의 종합세트" 천지일보 2017.08.11.

동물자유연대·카라, 서초동 보신탕 집 앞에서 '고통 없는 복날'을 외치다 데일리벳 2017.08.12

'법원 판결 인정 못 한다'...의사·시민 등 집단행동 조짐 연합뉴스 2017.08.13.

사법부와 국민의 법 감정의 괴리감이 집단행동 낳는다 경기일보 2017.08.13.

식탁에 오른 개고기, 원칙적으로 현행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2017.08.14.

의사도 시민단체도 네티즌도... 판결 불복 '봇물' 한국경제 2017.08.14.

다양한 法해석·의견... 분출하는 '민의' 경인일보 2017.08.20.

"높아진 시민의식" vs "사법적 가치수호" 경인일보 2017.08.21.

나. 2심

잔인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돼야...시민 3만 3천명 서명 데일리벳 2017.08.22.

개 학대·도살, 유·무죄 판결 엇갈리는 이유는 한국일보 2017.08.22.

'잔인한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하라' 노컷뉴스 2017.08.22.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하라 노컷뉴스 2017.08.22.

- 허가 받지 않은 도살이 합법? 노컷뉴스 2017.08.22.
- 'STOP DOG' 노컷뉴스 2017.08.22.
-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와 동물학대자에 처벌 탄원합니다 노컷뉴스 2017.08.22.
-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하라' 노컷뉴스 2017.08.22.
- '전기도살 충분히 잔인하다' 노컷뉴스 2017.08.22.
- "개 전기도살은 잔인하고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더 잔인" 뉴스1 2017.08.22.
- 전기코챙이로 개 도살 1심 무죄에...檢 "법 해석 잘못된 판결" 연합뉴스 2017.08.22.
- 전기 코챙이로 개 도살 1심 무죄에...검찰 "법 해석 잘못된 판결" SBS 2017.08.22.
- 동물보호단체 "법원,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하라" 뉴시스 2017.08.22.
- 동물단체, '수십마리 개 전기 쇠코챙이 도살' 사건 무죄에 반발 한강타임즈 2017.08.22.
- "전기도구로 개 도살" 1심 무죄..檢 "법리 잘못 이해한 판결" 파이낸셜뉴스 2017.08.22.
- 檢 "'전기코챙이로 개 도살' 무죄 판결...법리 잘못 해석한 것" 브릿지경제 2017.08.22.
- ‘전기쇠코챙이’ 개 도살 1심 무죄...검찰 "1심서 법리 오해" 향소 아시아투데이 2017.08.22.
- 전기코챙이로 개 도살 1심 무죄 판결...檢 "법리 오해 있다" 올치올치 2017.08.23.
- 인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탄원 3만명 서명, 서울고등법원에 제출 데일리벳 2017.08.23.
- ‘개고기 입법전쟁’ 총성이 울렸다 한겨레 2017.09.01.
- [애니칼럼] 방법만 괜찮으면 동물을 죽여도 되나요 한국일보 2017.09.08.
- "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엄중 처벌해야" 뉴스1 2017.09.13.
- PNR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부당”..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2017.09.13.
- PNR “개 전기도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해야” 데일리벳 2017.09.13.
- 동변 "개 전기도살은 학대... 무죄판결 파기해야" 뉴스1 2017.09.13.

-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파기되어야" 올치올치 2017.09.15.
- "인천 개 도살 무죄판결 파기하라" 한겨레 2017.09.26.
-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하고, 가해자 처벌해라" 뉴스1 2017.09.26.
-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파기하고 가해자 처벌해야' 탄원서 제출 데일리벳 2017.09.26.
- 동물보호단체 및 유관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하고, 가해자 처벌해라... 올치 올치 2017.09.27.
-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2심도 무죄 연합뉴스 2017.09.28.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농장주 2심도 무죄 YTN 2017.09.28.
-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동물에 대한 사법 학살" 뉴스1 2017.09.28.
-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2심도 무죄 뉴스1 2017.09.28.
-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2심도 무죄(종합) 연합뉴스 2017.09.28.
- 개 전기도살이 동물학대 아니라는 법원...“학대자에 면죄부” 한겨레 2017.09.28.
- '개 전기도살 혐의' 농장주 2심도 무죄..동물보호단체 "납득어려워" 파이낸셜뉴스 2017.09.28.
-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2심도 무죄 SBS 2017.09.28.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항소심도 '무죄' 아시아경제 2017.09.28.
-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2심도 무죄 매일신문 2017.09.28.
-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2심도 무죄 SBS 2017.09.28.
- 전기 쇠꼬챙이로 개 30마리 도살한 농장주 '무죄'...왜? 뉴시스 2017.09.28.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60대男, 2심서도 '무죄' 머니투데이 2017.09.28.
- 법원, '전기쇠꼬챙이'로 개 도살 항소심도 무죄 판결 아시아투데이 2017.09.28.
- 전기 쇠꼬챙이로 개 수십마리 죽인 농장주, 항소심도 무죄 경향신문 2017.09.28.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농장주 2심도 무죄... 잔인하지 않다? 국민일보 2017.09.28.
- 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에 "차라리 동물보호법을 폐기하라!" 올치올치 2017.09.28.

전기 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2심도 무죄 이데일리 2017.09.28.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2심도 무죄·동물보호단체 반발 데일리벳 2017.09.28.

전기 쇠꼬챙이로 개 30마리 도살 농장주 항소심도 무죄 경기일보 2017.09.28.

전기 개도살, 항소심서도 '무죄'... 동물단체 "사법학살" 강력반발 경인일보 2017.09.28.

[판결] 전기충격기로 개 도살한 농장주, 항소심도 "무죄" 법률신문 2017.09.29.

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담당검사 ‘직무유기’ 고발” 한겨레 2017.09.29.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에 ‘차라리 동물보호법을 폐기하라’ 데일리벳 2017.09.29.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2심도 무죄 연합뉴스TV 2017.09.29.

법원 '개 전기도살' 농장주 무죄선고 '후폭풍' 뉴스1 2017.09.29.

동물보호단체 '개 전기도살' 담당 검사 고발... '직무유기' 혐의 뉴스1 2017.09.29.

동물단체,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 담당 검사 직무유기로 고발 올치올치 2017.09.29.

동물보호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에 검사 직무유기 고발 연합뉴스 2017.09.29.

강아지 '전기도살' 무죄판결 받게 한 검사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인사이트 2017.09.30.

서울고등법원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 담당검사 직무유기 고발 파이낸셜뉴스 2017.10.03.

‘전살법’으로 도축한 식용견 사육농가 항소심서도 무죄 농민신문 2017.10.10.

다. 3심

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 파기돼야" 파이낸셜뉴스 2017.12.23.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 파기되어야 마땅..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데일리벳 2017.12.23.

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 파기되어야 마땅" 올치올치 2017.12.26.

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해야" 파이낸셜뉴스 2017.12.26.

- 입김 세지는 '개고기 금지' ... 업계는 '깨갱' 인천일보 2017.12.27
- 동물권 보호하면 인권은 당연히 ... '동물=물건' 민법 바뀌야 중앙SUNDAY 2017.12.31.
- 개고기 먹으려고 개 죽이는 건 불법일까? 한겨레 2018.06.22.
- [공동 성명]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 잘못돼...대법원 역사적 판결 데일리벳 2018.09.14.
-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뒤집혔다 데일리벳 2018.09.14.
- 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는 잘못...국민정서·동물고통 고려해야" 뉴스1 2018.09.14.
- 대법 "개 도살 엄격히 판단해야...사회통념 고려" KBS 2018.09.14.
- 대법 "개 도살법 허용 엄격해야"...'전기도살 무죄' 파기환송 연합뉴스 2018.09.14.
- 대법 "감전시켜 개 도살, 동물의 생명존중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서울경제 2018.09.14.
- 대법 "개 전기도살, 잔인한 방법인지 꼼꼼히 따져야"...무죄판결 파기환송 조선일보 2018.09.14.
- 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 다시 재판하라" 파기 환송 한겨레 2018.09.14.
- 대법 "개 도살법 허용은 엄격히 판단해야"..'전기도살 무죄' 1·2심 파기환송 파이낸셜 뉴스 2018.09.14.
- 대법 '개 전기도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개에 대한 사회통념 고려해야... 서울신문 2018.09.14.
- '전기로 개 도살' 파기환송...대법 "개 도살은 엄격히 판단해야" MBC 2018.09.14.
- 대법 "개 전기 도살 무죄 판결은 잘못" 파기환송 국민일보 2018.09.14.
- 개 전기 도살 '무죄'...대법원 "국민정서 고려해야" 파기 뉴시스 2018.09.14.
- 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는 잘못"...'유죄' 취지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2018.09.14.
- '전기 꼬챙이 개 도살' 무죄, 대법원에서 파기 오마이뉴스 2018.09.14.
- 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 환송" 매일경제 2018.09.14.
- 대법원, 1·2심 무죄 깨고 "개는 인간과 오랜 교감했다"며 전기도살 유죄취지... 세계일보 2018.09.14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하급심 무죄에...대법원 “생명존중정서 고려해... 경향신문 2018.09.14.

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사회통념 고려해 판단해야" YTN 2018.09.14.

대법 "전기로 개 '도살' 잔인한 방법 해당...다시 심리" 노컷뉴스 2018.09.14.

대법 "개를 전기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금지법 위반" 아시아투데이 2018.09.14.

동물단체 “대법원 개 전기도살 무죄 파기환송” 환영 한국일보 2018.09.14.

대법 "'인류와 오랜 교감' 개 도살법 허용은 엄격히 판단해야" SBS 2018.09.14.

대법, “개 전기 도살 무죄 판결 잘못돼” 파기환송 올치올치 2018.09.14.

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 다시 판단해야 OBS 2018.09.14.

대법원 "잔인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MBC 2018.09.14.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는 잘못" 내일신문 2018.09.14.

[뉴스 따라잡기] 전기 쇠꼬챙이 도살, 유죄? vs 무죄? 뉴스워치 2018.09.14.

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 환송.. "개에 대한 인식 고려해야" 노트펫 2018.09.14.

대법원, '개 전기도살 무죄' 하급심 파기환송... "심리 불충분" 이데일리 2018.09.14.

[판결] 대법원, '전살법' 개 도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법률신문 2018.09.14.

대법 "개 전기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가능" 연합뉴스TV 2018.09.14.

대법 “개 전기도살은 동물학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문화일보 2018.09.14.

"전살법" 위반...개 식용 줄어듦까 서울경제 2018.09.14.

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 다시 따져보라" 매일경제 2018.09.14.

'개 전기도살', 동물학대 범주에 포함되나 한국농어촌방송 2018.09.14.

쇠꼬챙이 감전 개 도살 무죄.. 대법 "국민정서 고려해야" 한강타임즈 2018.09.14.

동물단체, "대법 판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 될 것" 올치올치 2018.09.14.

"개 전기도살 방법 잔인해" 무죄 선고 1·2심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18.09.14.

- 대법원, ‘개 도살 잔인함’ 판단은 사회적 통념 고려해야 KBS 2018.09.14.
- 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다시 판단하라" 뉴스토마토 2018.09.14.
- 대법 "개는 인류와 교감... 도살 방법 잔인성 엄격 판단해야" 세계일보 2018.09.14.
- "'개 전기도살 유죄' 대법 판결, 동물권에 새로운 장" UPI뉴스 2018.09.14.
- 대법 "전기도살 잔인...개는 소·돼지와 다르다" MBC 2018.09.14.
- '개 전기도살' 1·2심 무죄 뒤집은 대법...판결 이유는? SBS연론사 선정 2018.09.14.
- 대법 "전기로 개 도축, 잔인한 방법"...'무죄 판결' 파기 JTBC 2018.09.14.
- 식용 개 감전시켜 도살, 현행 법 위반인가 아닌가... 대법 "동물 고통 고려, ... 법률방송뉴스 2018.09.14.
- 대법 “개 전기 도살 ‘잔인함’ 다시 따져 보라” KBS 2018.09.14.
- 사실상 개 도살 금지?...개 식용 업계 반발 KBS 2018.09.14.
- [자막뉴스] 대법 “개 전기 도살, 사회적 인식 고려 엄격 적용해야” KBS 2018.09.14.
- 대법 “인류와 오랜 교감...개 도살 적용에 엄격해야” 국제신문 2018.09.15
- 대법 “개 전기 도살, 사회적 인식 고려 엄격 적용해야” KBS 2018.09.15.
- 개는 다르다?...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는 잘못" MBC 2018.09.15.
- 대법 "개 도살법 허용 엄격해야"...'전기도살 무죄' 파기환송 MBN 2018.09.15.
- 대법원 ‘개 전기도살 무죄’ 파기 환송 환경일보 2018.09.15.
- 개를 돼지·닭과 같은 방법으로 도살하는 건 '무죄'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허프포스트코리아 2018.09.15.
- 대법원의 메시지 ‘생명이다, 전기도살 당한 개들도’ 한겨레 2018.09.16.
- 개 전기충격도축 무죄 판결 "다시 판단하라" 경인일보 2018.09.16.
- [형사]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리걸타임즈 2018.09.17.
- “개 전기도살은 잘못”이라는 판결의 의미 한국일보 2018.09.18.
- [영상뉴스] '개 전기도살', 동물학대 범주에 포함되나 한국농어촌방송 2018.09.21.
- '보신탕no 반려동물yes', 동물권 강조사회...개 식용문화 없어질까 서울경제

2018.09.30.

가축이냐, 반려동물이냐...끓이지 않는 개·고양이 식용·도살 논란 아시아경제
2018.10.18.

개 식용, 적폐냐 전통문화냐.. "국회서... 파이낸셜뉴스 2018.10.30.

라. 파기환송심

육견협회 '개 전기도살 무죄' 촉구 연합뉴스 2018.11.15.

동물보호단체, '개 전기도살 처벌' 촉구 연합뉴스 2018.11.15.

'개 전기도살' 에 대한 찬반 시위 연합뉴스 2018.11.15.

'개 전기도살 무죄' 파기환송심 법원 앞 찬반 목소리 연합뉴스 2018.11.15.

"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동물학대...강력히 처벌하라" 그린포스트코리아 2018.11.15.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확정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2018.11.15.

동물보호단체,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확정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2018.11.15.

개 전기도살 유죄판정 확정하라 뉴시스 2018.11.15.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확정 촉구 뉴시스 2018.11.15.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확정 촉구 동물보호단체 기자회견 뉴시스 2018.11.15.

“정상적 방법” vs “동물보호법 위반” 개 전기도살 위법 놓고 갈등 격화 서울경제
2018.11.15.

죽은 개는 말이 없고...법원 곤란케한 '개 전기도살법'의 잔인성 여부 조선일보
2018.11.15.

'개 전기도살 무죄' 파기환송심 첫 공판...양측 각각 기자회견 MBC 2018.11.15.

동물권 단체 "개 전기도살 처벌하라"...개농장주들도 '맛불 집회' 뉴스1 2018.11.15.

그 시절 바둑이의 죽음, 지금은 처벌될 수 있을까? 한겨레 2018.12.31.

처벌 강화에도 잇단 동물학대..."보완대책 필요" 연합뉴스TV 2019.01.14.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합법?'...육견종사자-동물보호단체 '맛불집회' 뉴스1
2019.01.17.

구조된 '식용견'도 안락사당했을까?...더 격화되는 논란 [이슈+] 세계일보 2019.01.17.

'전살법' 두고 개 사육농가-동물권 단체 신경전 오마이뉴스 2019.01.1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 식용' 비인도적 산업인가, 식문화인가 파이낸셜뉴스 2019.02.06.

'비인도적 산업' vs. '식문화'... 개 식용 논란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2019.02.06.

"불법도살 금지법 제정, 미적대지 말라!" 논객닷컴 2019.06.03.

개 식용 '방지'에서 '금지'로...바뀌는 인식에 힘받는 관련법안 발의 경향신문 2019.06.13.

법정에 선 '개 전기도살'...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죄가 될까 경향신문 2019.11.18.

[문화산책] 잔인함과 인간적인 것의 경계에서 광남일보 2019.11.21.

개를 가축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개 식용’ 법원 판단 다시 주목 경향신문 2019.11.22

"인권과 동물권, 선후 아닌 선순환 관계...학대 처벌 규정 명확해야" 뉴스1 2019.12.02.

'전기 도살' 개의 통증은 사실,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정의 경향신문 2019.12.06.

[뉴스분석]법원 최종판결 앞둔 '개농장 전기도축' 경인일보 2019.12.19.

'개 전기도살' 동물보호법 위반일까...법원,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머니투데이 2019.12.19.

'전기로 개 도축' 논란...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연합뉴스TV 2019.12.19.

개 전기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UPI뉴스 2019.12.19.

[속보]법원 "전기로 개 도축은 '잔인한 방법'...동물보호법 위반" 2019.12.19.

[1보] '개 전기도살' 도축업자,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뉴스핌 2019.12.19.

"전기쇠꼬챙이 개도살 잔인"...개농장 운영자에 벌금형 선고유예 뉴스1 2019.12.19.

'개 전기도살' 도축업자 유죄...동물 '잔인한 죽음'에 제동 경향신문 2019.12.19.

- 법원 유죄판결 환영하는 동물단체 연합뉴스 2019.12.19.
- 개 전기도살 사건 선고 관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9.12.19.
- 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환영한다' 연합뉴스 2019.12.19.
- 개 전기도살 사건 선고 관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9.12.19.
- 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환영한다' 연합뉴스 2019.12.19.
- 법원 유죄판결 환영하는 동물단체 연합뉴스 2019.12.19.
- 개 전기도살 사건 선고 관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9.12.19.
- 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환영한다' 연합뉴스 2019.12.19.
- 법원 유죄판결 환영하는 동물단체 연합뉴스 2019.12.19.
- 법원, "개 주둥이에 전기 흘려 도살은 불법" 첫 판결 헤럴드경제 2019.12.19.
- 법원 "개 전기 도살은 '잔인한 행위'...학대다" 재판단 뉴시스 2019.12.19.
- [종합] '개 전기도살' 도축업자, 파기환송심 유죄 뉴스핌 2019.12.20.
- 법원 "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방법'...사회 인식 고려해야"(상보) 머니투데이 2019.12.20.
- 법원 "전기 꼬챙이 개 도살은 잔인"...벌금형 선고유예 YTN 2019.12.20.
- 법원 "전기꼬챙이 개 도살, '잔인한 방법' 맞다" 아시아투데이 2019.12.20.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사육업자, 파기환송심서 유죄 판단 연합뉴스 2019.12.20.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사육업자, 파기환송심서 유죄 판단 SBS 2019.12.20.
- 개 전기 도살에...法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 UPI뉴스 2019.12.20.
- 개 '전기도살' 업자, 파기환송심서 '유죄' 노컷뉴스 2019.12.20.
- [TF포토]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 적극 환영한다' 더팩트 2019.12.20.
- [TF포토] '개 전기도살은 유죄!'...발언하는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더팩트 2019.12.20.
- [TF포토] '개 전기 도살' 파기환송심...유죄 판결 환영하는 동물권 단체 더팩트 2019.12.20.

- [TF포토] 동물권 단체,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 기자회견 2019.12.20.
- [TF포토] 동물보호단체, '한번에 죽음에 이르지 못한 개 전기도살' 더팩트 2019.12.20.
- [TF포토]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환영하는 동물권 단체 더팩트 2019.12.20.
- [TF포토] '개 전기도살'...파기환송심 관련 기자회견 더팩트 2019.12.20.
- [TF포토] '개를 감전사 시키는 행위는 동물학대다!' 더팩트 2019.12.20.
- "인천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 환영" 파이낸셜뉴스 2019.12.20.
- 법원 "전기 쇠꼬챙이 사용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한국일보 2019.12.20.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사육업자, 유죄 선고 조선일보 2019.12.20.
-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 적극 환영합니다' 뉴시스 2019.12.20.
-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유죄 판결 뉴시스 2019.12.20.
- '개 전기도살은 유죄' 뉴시스 2019.12.20.
- 개 전기도살 선고서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 뉴시스 2019.12.20.
-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유죄 환영 기자회견 뉴시스 2019.12.20.
- 고법 앞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선고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 뉴시스 2019.12.20.
-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 뉴시스 2019.12.20.
-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유죄 판결 뉴시스 2019.12.20.
- '개 도살 유죄판결을 환영합니다' 뉴스1 2019.12.20.
- 동물보호단체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 환영...식용 산업 없애야" 연합뉴스 2019.12.20.
-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 유죄에 동물단체 "기념할 판결" 환영 한국일보 2019.12.20.
- '전기 꼬챙이로 개 도살' 법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죽인 것" KBS 2019.12.20.
- '개 전기 도살' 유죄 판결에 동물단체 "환영", 육견협회 "농민 생존권 빼앗아..." MBC 2019.12.20.
- "인천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올치올치 2019.12.20.

- 법원 “개 전기도살 잔인한 행위”...도축 관행에 제동 한겨레 2019.12.20.
- 동물단체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개식용 종식'의 시작” 뉴스1 2019.12.20.
- 법원 “전기 꼬챙이 개 도살은 잔인”...벌금형 선고유예 YTN 2019.12.20.
-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 법률신문 2019.12.20.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업자, 벌금 100만원 유죄 선고 세계일보 2019.12.20.
- ‘쇠꼬챙이 개 감전사’ 농장주 파기환송심서 유죄 더팩트 2019.12.20.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사건 파기환송심서 유죄 MBC 2019.12.20.
- 개 전기도살 유죄..‘개 도축은 불법’ 못박았다 노트펫 2019.12.20.
- “전기꼬챙이 개 도살은 잔인” 첫 판단...대법 ‘유죄’ 못박았다 중앙일보 2019.12.20.
- [이미호의법정필담] ‘개 전기도살’ 재판과 선진국의 조건 머니투데이 2019.12.20.
- 법원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은 학대”...파기환송심서 ‘유죄’ YTN 2019.12.20.
- 법원 “개 전기 도살은 ‘유죄’...사회적 인식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2019.12.20.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사육업자, 파기환송심서 유죄 판단 SBS 2019.12.20.
- ‘개 전기 꼬챙이 도축’ 농장주, 네 번째 재판서 유죄 KBS 2019.12.20.
-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 사육업자, 유죄...“잔인,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 쿠키뉴스 2019.12.20.
- 法 “개 전기 도살은 동물학대”...벌금형 선고유예 동아일보 2019.12.20.
- [현장영상] “적극환영” vs “규정도 없다”...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반응은? KBS 2019.12.20.
- [기자브리핑] “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행위” 유죄 인정...동물권 변화 신호탄인... YTN 2019.12.20.
- 법원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하면 유죄... 방법 잔인해” 서울경제 2019.12.20.
- ‘개 전기 도살’ 도축업자 유죄...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MBN 2019.12.20.
-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 法 “잔인한 방법 해당” 머니S 2019.12.20.
- [자막뉴스] ‘개 전기 꼬챙이 도축’...4번 재판 끝에 ‘유죄’ KBS 2019.12.20.

- “전기쇠꼬챙이 개 도살 잔인” 유죄 판단…동물단체 환호 서울신문 2019.12.20.
- ‘개 전기도살’ 도축업자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연합뉴스TV 2019.12.20.
- 개농장 전기도축, 동물학대 ‘유죄’ 결론 경인일보 2019.12.20.
-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은 학대”...파기환송심서 ‘유죄’ YTN 2019.12.20.
- 법원, ‘전기로 개 도살’ 유죄…“잔인한 방법” 연합뉴스TV 2019.12.20.
-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 환영” 헤럴드경제 2019.12.20.
- “개 전기 도살은 잔인” 유죄 판결 중앙일보 2019.12.20.
- “개에 지속적 고통 주는 전기도살은 법 위반” 사육업자에 유죄 선고 조선일보 2019.12.20.
- 법원 “개 전기도살은 학대” 사육업자 유죄 서울신문 2019.12.20.
- 법원 “개 전기 도살은 잔인한 행위” 첫 판단 세계일보 2019.12.20.
-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업자, 법원 “잔인한 방법”...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일보 2019.12.20.
- 전기 꼬챙이로...개 도살 사육업자 파기환송심서 유죄 JTBC 2019.12.20.
- 동물애호 관련 판결과 법 규정에 나타난 이중성 월간조선 2019.12.20.
- 대법 개 전기 도살은 ‘잔인한 행위’..“시대·사회 따라 변동, 사회 인식도... 세계일보 2019.12.20.
- 법원 “전기 꼬챙이 꿰어 개 도살하는 행위는 잔인한 방법” 유죄 판결 여성신문 2019.12.21.
- 법원 "개 '전기 도살'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육업자 유죄 선고...동물단체... 펜앤드마이크 2019.12.21.
- [비디오머그] 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 첫 '유죄' 판결...도심 곳곳 찬... SBS 2019.12.21.
- [기자의눈] 동물 도살 문화, 생명 경시 풍조의 연장선 아시아투데이 2019.12.23.
- "정부, 동물 학대 적발하고, 개 도살 금지해야" 파이낸셜뉴스 2019.12.23.
- 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 관련 불법행위 59개소 67건 적발 수원일보 2019.12.23.
- 불법도살 만연..경기도, 동물보호 불법행위 대거 적발 한국정경신문 2019.12.23.

- 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 관련 불법행위 67건 적발 뉴스웍스 2019.12.23.
- 경기도 행정경찰 '전기 꼬챙이 개 도살업자' 등 무더기 적발 국제뉴스 2019.12.23.
- 잔인한 개 도살 여전...동물학대·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2019.12.23.
- 전기 감전으로 개 도살...동물학대·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KBS 2019.12.23.
- “전기도살·무허가 번식”...경기도, 동물보호 불법행위 67건 적발 뉴스1 2019.12.23.
- 경기도 특사경, '잔인한' 동물관련 불법행위 59개소 67건 적발 아시아뉴스통신 2019.12.23.
- 잔인한 개 도살 여전...동물 학대·불법 판매 무더기 적발 SBS 2019.12.23.
- '강아지 공장·전기로 개도살' 충격...경기도, 동물보호 불법행위 67건 적... 서울경제 2019.12.23.
- 다른 개 보는 앞에서 전기꼬챙이 도살...불법 59곳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2019.12.23.
- ‘다른 개 앞에서 전기로 도살’... 동물학대 업자들 무더기 적발 조선일보 2019.12.23.
- '전기 도살' 개 농장에 '공장'식 불법 사육장도... '동물학대' 업자들 무더기 적... MBC 2019.12.23.
- 여전한 전기 꼬챙이 도살...동물 관련 불법 업체 무더기 적발 MBN 2019.12.23.
- 다른 개들 앞에서 '전기 도살'...잔혹한 불법도살 현장 SBS 2019.12.23.
- [사설]동물들이 인간이어서 미안하다 경기신문 2019.12.23.
- 전기 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 뜨거운 물에 넣은 후 탈모기... 동물 불법도살... 세계일보 2019.12.24.
- 전기 감전으로 개 도살...동물학대·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KBS 2019.12.24.
- [자막뉴스] 전기 감전으로 개 도살...동물학대·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KBS 2019.12.24.

마. 재상고심

“개 전기도살은 동물학대”...대법, 도축업자 유죄 확정 한겨레 2020.04.09.

대법원 “개 전기 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 도축업자 유죄 확정 국민일보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연합뉴스 2020.04.09.

5번째 재판에서도 “개 전기도살, 잔인하다” 중앙일보 2020.04.09.

“쇠꼬챙이로 개 전기도살은 잔인” 도축업자 유죄 확정 경향신문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건 동물보호법 위반" MBC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감전시켜 도축...동물보호법 위반” KBS 2020.04.09.

“개 전기도축은 ‘잔인한 방법’...동물보호법 위반 맞다” 개 농장주 4년만 ... KBS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SBS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OBS 2020.04.09.

"개 전기도살은 동물학대"...전기도살 농장주에 유죄 매일경제 2020.04.09.

대법 "전기꼬챙이 개 도살은 '잔인'... 형사처벌 대상" 조선비즈 2020.04.09.

대법 "개 묶은 뒤 전기쇠꼬챙이 도살...잔인한 방법 맞다"(종합) 뉴스1 2020.04.09.

대법 "개 전기도살 유죄"...동물단체 "개도살자 설 곳 없어져" 환영 뉴스1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 YTN 2020.04.09.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확정 법률신문 2020.04.09.

대법 "전기꼬챙이 개 도축은 유죄"...5번째 재판끝 확정 뉴시스 2020.04.09.

개 전기도살, 5번째 재판끝에 '유죄' 확정 경인일보 2020.04.09.

"개 전기도살은 유죄"... 5년 만에 대법원 확정 머니S 2020.04.09.

대법 “개 전기 도살은 동물학대”..도축업자 유죄 확정(종합) 파이낸셜뉴스 2020.04.09.

대법 "전기꼬챙이로 개 도살하는 '전살법', 동물보호법 위반" 아시아경제 2020.04.09.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도축업자 유죄 확정...대법 "동물학대" 뉴스핌 2020.04.09.

대법원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한 업자, 유죄 인정” 세계일보 2020.04.09.

[TF이슈] "전기도살은 잔인하지 않다"는 개농장주 더팩트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은 유죄"...5번째 재판 끝에 확정 머니투데이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 국제신문 2020.04.09.

‘개 전기도살’ 다섯 번 재판 끝에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서울신문 2020.04.09.

"전기도살 돼지는 합법, 개는 불법"... 동물보호법과 가축법 사이 '식용견' 다... 법률방송뉴스 2020.04.09.

[판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 로이슈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축하면 유죄" 한국일보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 MBN 2020.04.09.

대법 "전기 꼬챙이 개 도살은 동물학대 유죄"...동물보호단체 "국회, 개 식용... 포츠저널 2020.04.09.

대법원 "개 전기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도축업자 유죄 확정 뉴스웍스 2020.04.09.

‘개 전기도살 사건’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이투데이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노컷뉴스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농장 운영자 유죄 ... 아주경제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은 동물학대 유죄" 5번째 재판 끝에 확정 한스경제 2020.04.09.

전기로 개 도축한 업자, 재판 5번 끝에 '유죄 확정' 뉴스토마토 2020.04.09.

대법 "전기고챙이 개 도축은 유죄"...5번째 재판 끝 확정 톱스타뉴스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 도살 '잔인한 방법'...개농장주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2020.04.09.

개 전기도살 사건 대법원서 최종 유죄 판결 올치올치 2020.04.09.

대법원, 개 전기도살 유죄 판결 환경일보 2020.04.09.

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농장 운영자 유죄 ... 아주경제

제 2020.04.09.

대법원 "개 전기 쇠꼬챙이 전살법 잔인"...동물보호단체 "사법부 정의로운 판결... 로리
더 2020. 04.10.

“동물보호법 위반 앓고 개 도살? 힘들죠” 한겨레 2020. 04.10.

'개 식용 종식' 한발 더 앞으로 프레스인 2020. 04.10.

개 전기 도살에 '유죄' 내린 대법원, 이유는? 머니투데이 2020. 04.10.

‘개 전기도살 사건’의 경과와 의의 및 향후과제

발간처 동물자유연대

발간일 2020년 7월 15일

발간인 대표 조 희 경

집필 최용범(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한 혁(동물자유연대)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17길 1-77

홈페이지 <https://www.animals.or.kr>

전 화 02-2292-6337

팩 스 02-2292-6338

이 메 일 admin@animals.or.kr
